

健全 家庭儀禮 定着方案

李必道

裴花玉

李顯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리말

家庭儀禮는 가족과 그 구성원의 삶의 원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적 상징행위이다. 최근에 들어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국민의 생활양식, 인간관계,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는 가정의례 관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 결과, 가정의례는 상징적 의미와 기능의 표출보다는 절차와 형식만을 갖춘 채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허례허식적인 가정의례 관행의 배경에는 體面文化가 작용함을 찾아볼 수 있다. 체면 및 과시문화의 확산은 과시소비를 가져오며 가정의례 행사를 낭비성으로 흐르게 한다. 이러한 과시소비와 동시에 사회 전반의 과소비 분위기는 혼례 및 장례 등 전체 가정의례의 高費用構造를 유도하게 되었다.

婚禮慣行과 관련하여 호화 결혼식 등 여러 가지 폐해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등하고 인격적이어야 할 부부의 결합이 물질적 재화교류의 통로가 되어 가족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葬墓慣行은 복잡한 장례절차와 불법 및 무연고묘지 등 묘지의 국토잠식으로 인한 환경문제, 그리고 묘지비용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일부 계층에서 행해지고 있는 誇示的 行態의 가정의례는 점차 확산되어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의례와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과 환경들에 의해 가정의례관행의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바람직한 家庭儀禮 規範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실성이 있는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家庭儀禮의 社會的 意味와 역사적 전개를 시작으로 가정의례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실성 있는 家庭儀禮 實踐方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당 연구원의 李必道 責任研究員, 裴花玉 主任研究員과 湖西大學校 李顯松 教授에 의해 완성되었으며 研究陣의 구체적인 집필내역은 다음과 같다.

序論 (李必道)

家庭儀禮의 社會文化的 意味와 變遷 (李必道, 李顯松)

家庭儀禮의 現況 및 問題點 (李必道, 李顯松, 裴花玉)

外國의 家庭儀禮制度 比較分析 (裴花玉)

健全 家庭儀禮의 擴散 및 實踐方案 (李必道, 李顯松)

마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준 徐文姬 責任研究員과 卞在寬 責任研究員에게 감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출간됨으로써 健全 家庭儀禮가 확산되는데 가일층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라며 학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의 담당관들에게 一讀을 권하고 싶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著者들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년 12월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敬培

目次

要約	7
I. 序論	13
II. 家庭儀禮의 社會文化的 意味와 變遷	16
1. 家庭儀禮의 意味와 社會的 機能	17
2. 家庭儀禮의 變化	19
3. 婚禮의 歷史的 變遷	21
4. 喪葬禮의 歷史的 展開	25
III. 家庭儀禮의 現況 및 問題點	32
1. 家庭儀禮慣行의 實態	32
2. 慶弔慣行의 變化	57
IV. 外國의 家庭儀禮制度 比較分析	65
1. 外國의 婚禮制度	65
2. 外國의 葬墓制度	71
V. 健全 家庭儀禮의 擴散 및 實踐方案	81
1. 家庭儀禮 改善을 둘러싼 爭點	81
2. 健全 家庭儀禮의 實踐方案	88
參考文獻	97

表目次

〈表 III-1〉 結婚禮式の認識程度	45
〈表 III-2〉 婚禮關聯費用規模推定	48
〈表 III-3〉 年度別火葬推移	53
〈表 III-4〉 火葬收用與否	54
〈表 III-5〉 火葬贊成理由	55
〈表 IV-1〉 韓國과 主要國의 婚禮慣行比較	69
〈表 IV-2〉 韓國과 主要國의 墓地制度比較	77
〈表 V-1〉 婚禮構成要素別實踐內容	92
〈表 V-2〉 葬禮構成要素別實踐內容	93

要約

- 본 연구는 家庭儀禮의 역사적 전개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짚어보고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의 가족주의 정신과 상부상조 정신에 알맞는 가정의례모형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健全 家庭儀禮모형을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家庭儀禮의 社會文化的 意味와 變遷

- 儀禮의 意味와 社會的 機能
 - 의례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통하여 삶의 활력을 부여하는 것임.
 - 또한 의례는 집단 결속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하며 의례 체계는 사회전체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짐.
- 家庭儀禮의 變化
 - 조선시대는 禮治主義를 표방하고 통과의례인 冠婚喪祭를 朱子家禮라 하여 교화의 수단으로 수용하였으며, 이후 가정에서 행하는 관혼상제 즉, 사적인 의례 행위를 공법으로 간섭하였음.
 - 조선조 말 천주교·개신교, 서구 신문화의 전래와 일본 제국주의 여파로 전통적 의례가 금지당하게 됨. 1934년 家庭儀禮準則이 제정됨. 이같은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의례의 간소화와 세속적 합리화가 이루어짐. 또한 자본주의적 경제행위의 확대에 따라 의례서

비스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게 됨.

- 家庭儀禮의 變遷

- 유교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한국 전통사회의 혼례관행은 엄격한 의례절차를 갖추지 않고 신부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중심이 었음. 조선 초기 朱子家禮의 도입이후 六禮 또는 四禮와 같이 가례의 준칙이 혼례규범으로 제시되어 보편화되었음.
- 조선시대에 들어와 상·장례가 법제화되면서 조상숭배에 의한 성리학적 상·장례가 보편화되기 시작함. 특히 억불숭유정책으로 火葬制를 강력히 금하고 埋葬制를 시행하는 등 유교적 장묘문화가 자리잡았고 풍수지리설에 따른 명당선호행태의 성행으로 선산묘지가 생기고 묘지의 조성이 확산되었음.
- 현대 혼례 및 장묘관행에는 간소화와 합리화에 편승하여 상징적 요소가 상실된 경우 전통의식의 절차는 남아있으나 형식 및 내용이 변화한 경우가 있음.

2. 家庭儀禮의 現況 및 問題點

- 家庭儀禮慣行의 實態

- 1960년대 이후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과정 속에서 가정의례관행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 가정의례는 상징적 의미와 기능의 표출보다는 절차와 형식만을 갖춘 채 과시적 행태로 흘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婚禮慣行

- 혼례관행의 변화는 婚姻儀禮 節次와 이에 따른 경제적 費用問題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혼인의례 절차 측면을 살펴보면 외형상으

로는 전통적 절차를 따라가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 경제비용 측면에서는 혼인과정에서 일련의 물질적 재화의 이동으로 요약될 수 있음.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변질된 의미의 禮物交換과 禮物의 肥大化임.

- 葬禮慣行

- 장례관행의 변화를 살펴보면 직업적인 葬儀師 출현, 殮襲과정과 成服祭의 간소화, 三虞祭, 卒哭祭, 小喪 및 大喪의 소멸, 火葬 및 納骨制의 등장 등 전통적인 장례에 비해 형식의 간소화 현상이 뚜렷함.
- 최근에 들어 뿌리깊은 매장위주의 관행이 조금씩 火葬選好의 인식과 태도로 바뀌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아직까지 화장률은 기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나 최근 수년 사이에 화장을 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었음.

- 相扶相助慣行

- 상호부조의 범위는 혈연이 최우선이나 도시화 및 산업화 진전에 따라 지연, 학연과 직연의 비중이 높아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식적 체면치레나 주위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과도한 慶弔費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임.

3. 外國의 家庭儀禮制度가 가진 示唆點

- 外國 婚禮制度의 示唆點

- 낭비적이거나 허례허식적 요소 배제
- 혼례비용의 부모의존도 저하

- 혼례비용의 분담률 동일화
- 모든 혼례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 및 실천
- 外國 葬墓制度의 示唆點
 - 장례절차의 간소화
 - 화장위주 장례관행의 정착화
 - 집단묘지의 공원화
 - 시한부 묘지사용제도 및 묘지면적제한제의 도입
 - 장례예식장 및 전문 장의사 중심의 장례제도

4. 健全 家庭儀禮의 擴散 및 實踐方案

- 健全 家庭儀禮의 目標와 基本方向
 - 바람직한 家庭儀禮文化의 정착을 위해 가정의례문화의 가치관 정립과 가정의례 실천을 통한 사회기풍 조성을 목표로 설정함.
 - 바람직한 가정의례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건전한 가정의례모델의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것, 둘째, 가정의례관련 종합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가정의례서비스제도를 개선하는 것, 셋째, 경조금 수수관행을 개선하며, 범시민운동차원의 모범적인 가정의례실천 사례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健全 家庭儀禮基準 設定 및 段階別 實踐方案
 - 사회지도층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건전 가정의례모델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단계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이는 타 사회계층의 공감을 얻어 전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健全 婚禮의 具體的 實踐方案

- 약혼식: 폐지함.
- 함들이: 폐지함.
- 하객초청범위: 양가 각각 50명을 넘지 않는 가족행사로 함.
- 청첩장: 혼인식 후 인사장으로 대신함.
- 축의금: 친인척 이외의 축의금 수수는 폐지함.
- 폐백: 폐지함.
- 피로연: 가까운 친척들과의 식사로 제한함.

- 健全 葬禮의 具體的 實踐方案

- 장례절차: 고인의 종교에 따라 臨終에서부터 下棺에 이르는 간소화된 장례절차를 진행함.
- 장례장소: 상업장례식장 외 기타 종교시설의 사용을 확대해 나감.
- 조문객 초청범위 및 부의금: 인쇄물에 의한 부고행위 금지와 부의금의 교환범위를 친인척으로 제한하도록 함.
- 문상 및 음식접대: 문상객은 경건하게 문상을 하고, 상주와 가족은 문상객에게 간단한 음식을 제공토록 함.
- 묘지사용: 단위면적(6평 이하)과 사용기간(60년)을 제한하고, 매장 과 화장제도를 접목시킨 가족형 합동분묘형식을 권장함.

- 家庭儀禮關聯 綜合서비스體系 構築

- 장묘관련 종합서비스는 가정의례거행에 필요한 절차와 정보, 장의물품, 가정의례 및 묘지관련 시설이용, 그리고 행정절차 등 모든 서비스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함.
- 종합가정의례서비스센터 운영은 가정의례절차의 신속화 및 가정의례 관련시설의 선진화를 가져오게 되며, 가정의례비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임.

- 慶弔金 授受慣行 改善

- 경조사에 대비한 다양한 저축 및 보험상품을 개발, 보급하여 가정의례비용을 저리로 조달, 장기에 걸쳐 분납케 하여 경조금 의존도를 낮춤.
- 경조금 금액은 전통과 관습을 고려하여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적정금액을 권장하고, 범시민실천운동을 통해 이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함.

I. 序論

가정생활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가정의례는 가족과 그 구성원의 삶의 원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文化的 象徴行爲이다. 예로부터 가정의례는 전통사회의 家父長制的이고 가족공동체적인 영향을 받아 왔으며, 전통적 관습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근년에 와서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과정은 국민의 生活樣式, 人間關係, 價値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가정의례 관행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가정의례는 상징적 의미와 기능의 표출보다는 절차와 형식만을 갖춘 채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허례허식적인 가정의례 관행의 배경에는 體面文化의 전반적 확산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경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가정의례는 전통적 상징과 사회통합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誇示的 行態로 흘러 社會的 違和感을 조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7:76~81). 체면문화는 가정의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세력과 시 및 체면유지, 남의 이목을 의식한 과도한 지출을 유도하게 된다. 즉 가정의례에 있어서 체면문화와 과시문화의 확산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가정의례 행사를 낭비성으로 흐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¹⁾. 이 때문에 誇示消費와 사회전반적인 과소비 분위기의 영향은 예단, 신혼여행, 신혼살림비용과 장의용품 및 묘지관련 비용 등 消費

1) 과소비와 과시소비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과소비와 과시소비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정의례에서 誇示消費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며, 體面維持를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의 高級化, 大型化로 가정의례의 고비용 구조를 유도하게 된다.²⁾

우리 사회는 ‘家庭儀禮에 관한法律’을 제정·시행하고 있음에도 婚禮慣行과 관련하여 불 때 호화 결혼식, 과다 혼수, 함값 시비, 예식업소의 폐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등하고 인격적이어야 할 부부의 결합이 物質的 財貨交流의 통로가 되어 가족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葬墓慣行은 사회의 문화적 관습으로 인식되어 제도적 규제를 크게 받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복잡한 장례절차 및 고비용, 불법 및 호화분묘 등 묘지의 국토잠식으로 인한 환경문제, 그리고 묘지비용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가정의례 관련업소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 사회적 폐해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일부 계층에서는 과시적 행태의 가정의례행사를 치루어 사회 물의를 빚는 사례도 있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작용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IMF시대에 따른 경제붕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가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중이다. 한편에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현실적인 규제를 철폐한다는 차원에서 가정의례관련법도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 때 생활관습에 속하는 가정의례의 관행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가정의례와 관련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과 상황들에 의해 가정의례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

2) 혼례문화와 관련된 소비의 고급화 및 대형화는 90년대에 들어 뚜렷이 드러난다. 예단 및 예물의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가짓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혼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밖에 결혼 예식의 대형화 추세, 신혼여행지의 고급화 및 국제화에 대한 최근의 조사도 있다. 이현송·배화옥,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996, pp.10~14, 소비자보호원, 『혼례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보고서』,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 pp.25~75.

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가정의례 규범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성이 있으며, 현실성이 있는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의례관련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家族主義 情神과 相扶相助 情神에 알맞는 가정의례모델을 구축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건전 가정의례를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정의례관련법률의 제정목적은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그 의식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낭비를 억제하고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 가정의례라 함은 일반적으로 婚禮, 喪禮, 祭禮, 回甲宴 등을 말하며 여기에다가 통과의례로서의 백일이나 돌도 포함이 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가정의례 가운데 婚禮 및 喪禮를 중심으로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祭禮와 回甲宴 등의 가정의례가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료의 제약과 허례허식과 관련하여 볼 때 婚禮와 喪禮의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지적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가정의례 가운데 인식과 비용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家庭儀禮의 社會文化的 意味와 變遷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의 사회변화를 산업화와 도시화로 요약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儀禮의 變化를 간소화 및 합리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의 문화 및 사회의식의 변화를 세속화와 개인주의의 확대에 이해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의례의 변화를 象徴的 意味의 탈색 및 의례행위에 있어 公利的 要素의 확대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³⁾

본 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의례로서 자리잡고 있는 婚禮와 喪禮를 중심으로 의례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살펴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婚·喪禮의 구성요소별 실태와 변화 방향을 검토한 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례 및 보다 좁게는 婚·喪禮의 문제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가정의례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많이 있었음에도 실제 개선을 위하여 기여한 점이 별로 크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儀禮의 意味와 機能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출발하여 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근본적인 성찰에 토대를 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⁴⁾

儀禮는 어떤 사회 문화적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을까? 현대의 도시화 및 산업화된 사회에서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의례란 과거 전통사회에 비교할 만큼 큰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3)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현송·배화옥, “의례의 사회적 기능과 변화”, 『보건사회연구』, 제16권 1호, 1996 여름호 pp.75~81 참조.

4) 가정의례 문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의 전략이나 바람직한 모델 등에 관해서는 몇몇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하기 바람. 예를 들면 관혼상제 전반적인 문제는 장철수(1995), 혼례문제는 이현송·배화옥(1996),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연구 등이며, 장례문제는 이현송·이필도(1995), 장현섭(1997) 등이 있음.

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혹시 의례란 과거와 현대의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있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機能主義的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가정의례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하여는 바로 이러한 의례의 근본적인 의미와 기능에 대한 考察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인류학적 관점을 참고로 하여 儀禮의 社會 文化的 意味와 機能을 고찰해 보고, 의례의 일반적인 변화상과 함께 범위를 좁혀 婚·喪禮의 변화 양태 및 이것이 갖는 사회 문화적 의미와 기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家庭儀禮의 意味와 社會的 機能

이 세상의 모든 文化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의 부분마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상징하는 절차 즉, 의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儀禮는 종류가 다양하고 목적, 형태,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지만 종교학이나 인류학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대별한다. 1년을 주기로 매년 되풀이하여 행하는 연중의례 또는 세시의례(Yearly Rites), 사람의 일생을 주기로 하여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의 경과마다 행하는 통과의례(Transitional Rites), 기우제나 승전 기원제 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때에 따라 행하는 임시의례(Contingent Rites)이다(Van Gemep/전경수 역, 1985). 年中儀禮는 자연현상의 주기에 따라 행하여지는 의례임에 반하여 通過儀禮는 자연현상과는 무관하게 인위적인 행사를 치르는 의례이다. 따라서 연중의례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인간의 삶을 확인하고 생활의 율동을 찾는 의례이기 때문에 소극적 의례이며, 통과의례는 인간이 독자적으로 주기와 절차를 만들고 윤리성을 가미하거나 神性을 끌

어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의례이기 때문에 적극적 의례라 할 수 있다.

통과의례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이광규, 1985). 첫째 단계는 이전에 있었던 상태나 조건을 斷絶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례 또는 의식을 통한 위기의 克復이며, 세 번째는 새로운 상황 내지는 사회적 범주로의 編入이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의례 단계를 통과하면서 의례의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일상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일상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의례의 과정을 장례를 예로 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장례란 고인과 상주간에 같은 가족으로서 생활을 공유하던 단계로부터 兩者를 분리시키며 일정한 슬픔을 표현하고 주위의 확인을 받는 의식을 거쳐 상주는 다시 새로운 단계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례의 과정이 의례의 당사자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을 통한 삶의 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의례는 集團結束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Popenoe, 1986). 의례를 통하여 의례의 참가자들 간의 집단소속감을 확인하고 결속을 공고히 하며 자신의 집단(In-group)과 타집단(Out-group)의 구분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의례체계는 사회전체의 統攝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한다(전병재, 1989). 전통에 뿌리를 둔 문화의 수용과 변용을 매개해 주는 禮는 법률이 추구하는 공식적이며 기능적인 통합을 보완하는 기제로서 개인에 내재하여 상징적인 준거기준으로 작용한다. 禮가 의례로 현재화하여 각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규범으로서 내재화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의 행동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통합에 기여하도록 내재적인 통제의 기능을 한다.

2. 家庭儀禮의 變化

조선왕조는 禮治主義를 표방하고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하여 통과의례인 관혼상제를 朱子家禮라 하여 교화의 수단으로 수용하였다. 조선왕조 이전부터 한국의 전통사회는 농경문화권이었으므로 가족을 떠난 개인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의 행사는 가족내 구성원들에게 강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며 조선왕조는 가족을 교화의 場으로 하여 관혼상제를 철저히 실행할 수 있었다. 가정에서 행하는 冠婚喪祭 즉, 사적인 의례 행위를 公法으로 간섭한 것이 조선시대의 의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교에 기반을 둔 가정의례가 그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말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래 등과 함께 밀려들어온 서구의 신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여파로 전통적 의례가 금지당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먼저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895년 단발령을 시작으로 하여 예컨대 喪禮에 관하여는 1912년 ‘墓地·火葬場·埋葬 및 火葬取締規則’이 조선총독부령으로 발표되어, 공동묘지와 화장장의 건설을 비롯한 매·화장 관행의 변화가 정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유도되었다(장철수, 1995). 1934년 ‘家庭儀禮準則’의 제정으로 의례의 간소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법률이 공포되어 조선시대의 주자가례를 대치하는 새로운 행정력에 의한 의례형식의 보급이 추진되었다.

해방 이후 1956년 재건국민운동본부는 일제시대의 가정의례준칙에서 한 단계 더 간소화를 요점으로 하는 ‘標準儀禮’를 제정하였다. 그 후 보건사회부에서 1961년 기존의 표준의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標準儀禮’를 제정하였으며, 이어서 1969년 현재 실행되고 있는 ‘家庭儀禮準則’이 새로이 공포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의례의 내용에 있어 간소화가 현저히 진행되었으며, 조선시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의례의 행위를 공적인 법률로 강제하는 전통 또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도 계승되고 있다.

儀禮의 내용에 있어서 간소화가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의 영향에 힘입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통신앙의 세속주의적 요소가 기독교의 합리주의적인 요소 및 서구문화의 물질주의와 쉽게 결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례에 있어서의 급속한 간소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신앙은 현세 중심적인 世俗主義에 근거하고 있었다(최길성, 1991). 조선조의 지배층이 신봉하던 주자가례가 체면적 명분주의에 의한 뒷받침으로 지지될 수 있었던 반면(장철수, 1995:253~263), 민간의 의례 행위에는 현세중심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둔 실질적 합리주의가 지배했었다. 이러한 전래의 세속적인 의식 기반은 서구의 기독교 교리 중 합리적인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수용·결합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진홍의 연구(1984)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수용된 개신교의 喪祭禮 모두가 한결같이 인간을 향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喪祭禮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개신교의 의례는 편의, 위생학적 배려, 위로, 권면, 사회 윤리적 요청에의 부응 등의 合理的 思考觀을 의례의 준거틀로 삼는 것으로 밝혀진다. 즉 개신교 의례가 한국인의 전통적인 제례의 형식성을 타파하고 세속적 합리성을 확립하는 데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의례에 대한 또다른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친족 및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결속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친족 및 가족제도의 원리가 핵가족 중심 및 나아가 개개인의 성취 중심으로 변화함으로써 과거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集團主義的 儀禮制度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 서구의 지배적인 이념인 개인주의 및 부부중심의 핵가족주의는 감정의 관리를 전적으로 개인 및 가족의 범위에서 통제하기를

요구하며 타인과의 관계는 功利主義的인 契約關係로 맺어지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변화된 형태의 의례에서 참가자들 사이의 감정적인 교환의 부분은 축소 내지는 소멸되며, 반면 계약적인 거래의 관계가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례의 간소화 추세는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에 기반을 둔 편의주의의 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의례에 변화를 가져온 또 다른 요인으로는 자본주의적 경제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 혈연 집단 및 지역 공동체에 의해 담당되었던 의례행위의 많은 부분을 시장에서 구입하는 서비스의 일부로서 상품화시켰다는 점이다. 의례 서비스의 商品化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의례의 구성과 절차부분의 왜곡을 낳았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례 행위가 하나의 소비행태의 일부로서 便宜性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업주의와 결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급자 입장에서의 상업주의와 소비자 입장에서의 편의주의의 결합은 의례의 상징성과 경건성을 편의성으로 대체시킴으로써 과소비와 무의미한 간소화라는 양극단의 행태를 동시에 보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3. 婚禮의 歷史的 變遷

유교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한국 傳統社會의 婚禮慣行은 엄격한 의례절차를 갖추지 않고 신부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중심이었다. 혼인식 후 사위가 신부집에 체류하면서 아이가 클 때까지 처가와 본가를 왕래하는 胥留婦家婚⁵⁾이 행해졌는데 이는 父系社會의 이념과는

5) 胥留婦家婚이란 선모처제를 의미하는 전통 혼례관행이었다. 한국 전통사회는 강한 부계사회였지만 일찍부터 부처제가 아닌 선모처-후부처제를 취하였다. 유교의 영향으로 四禮가 보편화됨에 따라 婚禮의 절차가 복잡해지고 전통혼례가 가진 소박한

상반된 특성을 띠고 있었다.

조선 초기 주자가례의 도입이후 六禮 또는 四禮와 같이 가례의 준칙이 혼례규범으로 제시되었다. 사례의 절차를 보면 의혼(議婚, 중매를 통하여 신부측의 허락을 받아냄), 납채(納采, 신랑측이 신부집에 청혼서식을 보냄), 납폐(納幣, 신랑측이 신부측에게 혼례증표와 폐백을 전달함),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를 맞이함)이다. 이 중 일부 의례는 왕실과 사대부 층에서만 일부 행해지고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16세기 이후 실제 민간에서 행해지던 구식혼례⁶⁾의 절차를 살펴보면 주자가례의 영향으로 그 형식이 매우 복잡하여 크게 준비의례, 대례, 후속의례로 나누어진다. 준비의례는 혼담(婚談), 사성(四星), 택일(擇日), 함(函)이고, 대례는 초행(初行)과 상견교배(相見交拜)이며, 후속의례로는 신행(新行), 현구고례(見舅姑禮), 근친(覲親)으로 구성되었다. 見舅姑禮는 후일 폐백(幣帛)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변화를 보인 것이 거주규정인데 유교적인 영향하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신혼부부의 거주가 婦處制를 취하게 되었다. 근대화과 서구화 과정에서 신식혼례가 확산되면서 신혼부부의 거주규정은 해묵이, 달묵이, 3일 신행, 당일 신행⁷⁾ 등으로 변모하다가 현대

정신은 사라졌어도 胥留婦家婚의 잔재는 조선후기까지 지속하였다. 그러나 점차 胥留婦家婚의 성격이 약해지면서 新行하는 시기가 점점 짧아지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전통혼례에 관한 내용은 박혜인(1991)의 연구를 참조할 것.

- 6) 일제가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말살하고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와해시키려는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혼례의 간소화를 표방하면서 의례준칙을 제정하였다. 일제가 표방한 의례준칙에 준거하여 간소화되고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모된 혼례를 ‘신식혼례’라 하고 전통혼례를 ‘구식혼례’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혼례가 변천된 계기에 관하여는 장철수(1995)의 연구를 참조할 것.
- 7) 혼례식 후 신부가 처가에서 해를 넘기고 새해에 시가에 신행하는 것을 ‘해묵이’라고 하고, 봄에 혼례를 올리고 그 해 가을에 신행하는 것을 ‘달묵이’라고 한다. 해묵이의 경우 한 해만이 아니고 여러 해를 묵혀 신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가와 친정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3일 신행이나 당일 신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모두가 전통혼례의 胥留婦家婚의 잔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박혜인, 1991:46~47).

사회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신부집에서 하룻밤 머무는 형태로 바뀌어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現代 婚禮慣行의 양상은 과거 혼인이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던 것이 차츰 본인 대 본인 위주의 결합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가족적 친족주의 이념에 따라 개인이 가족의 하위개념이었던 전통사회와 비견하면 뚜렷한 변화를 보여 준다. 여전히 가문의식, 체면의식의 영향이 남아 있으나 연령이 저하할수록 혼례에 대한 개인적 사고의 개입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배우자의 선택권이 결혼 당사자에게 이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최근의 결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인 先本人決定, 後父母承諾 형태의 경우 1940년대 이전에 2퍼센트 미만이던 것이 1980년대에는 약 3분의 2 정도에 이른다. 반면 193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부모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1퍼센트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공세권 외, 1990).

전통 의례의 요소는 몇 가지의 방식으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변화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 의례의 형식과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상징적 의미의 요소까지 계승된 혼례의 절차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발견하기 힘들다. 가장 흔한 경우로서 전통의식이 형식에 있어 큰 변화없이 남아있는 반면 의식을 뒷받침하는 의미 혹은 상징적 요소가 상당 부분 퇴색 혹은 상실된 경우를 들 수 있다. 函 및 幣帛이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함들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四柱單子를 뒷받침하고 있던 민간신앙의 요소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그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신랑가에 공식적인 첫 인사로서의 幣帛 또한 친족공동체 의식의 소멸 및 혼례장소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첫 인사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상당부분 변모된 경우이다. 이와 같이 의미가 상실되거나 변모된 채 형식만이 남아있는 경우는 儀禮의 合理化라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점차 소멸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전통 의식의 節次는 남아있으나 형식 및 내용이 변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물 및 혼례식이 그것이다. 과거 전통 혼례에서 예물은 주로 신랑가로 부터 신부가로의 물건의 전달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예물이라 하면 新婦家로부터 新郎家로의 물건의 전달이 주종을 차지하게 되었다. 婚禮式의 경우 전통 혼례의식은 일제시대에 서구식의 혼인식으로 변형되었다. 이 과정에서 혼례식 장소 및 혼례의 절차가 과거의 혼례와는 완전히 단절된 형태로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의례의 내용에 있어 변화의 방향은 한편으로는 사회환경에의 적응이란 관점에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物質主義의 확대에 따라 절차 및 내용이 보다 복잡해지는 방향으로 진전된 경우도 관찰된다. 근래에 들어올수록 더욱 높아지는 호화혼수 및 호화결혼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혼례식에서 대규모 하객동원을 통하여 집단 소속의 확인을 추구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의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호화 혼례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례 형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면에는 이러한 의례를 통하여 참여자 집단들에게 중요한 기능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⁸⁾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혼례의 변화의 방향은 象徴的인 要素의 脫色과 함께 그 자리에 의례의 변형을 통해 사회적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형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8) 혼례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이현송·배화옥(1996)과 김모란(1994)의 연구를 참조할 것.

4. 喪葬禮의 歷史的 展開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생물적인 삶의 방식을 제도화하고 상징화시켜 왔으며, 나아가서 죽음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인간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喪葬禮이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일상활동에서 죽은 사람의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상장례의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死者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관념을 반영한 死者儀禮에서는 死者를 될 수 있으면 이승과 분리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死者가 이승에 대한 생각을 잊고 영혼이 저승에서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행위가 중심이 된다. 死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생각을 반영한 祖上崇拜에서는 조상이 이승에 계속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승의 사람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장치를 마련한다. 즉 조상숭배는 육체를 떠난 영혼을 다시 재결합시키고, 또 영혼을 이승에서 정중하게 모시는 행위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喪葬禮는 사자의례와 조상숭배가 혼합되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자의례의 모습은 생활조건이 불확실한 상태인 선사시대의 單獨葬과 풍부한 부장품, 그리고 고구려시대의 3년상의 전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고구려의 石室墓는 사자의례에서 조상숭배의례로 이행되는 과도적인 喪葬禮가 등장하면서 권력을 가진 계층의 묘제로 정착되었다. 그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왕릉의 기본 묘제로 전통을 잇고 있다. 신라의 경우 積石木槨墳과 함께 사자의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나 불교의 영향으로 火葬制가 등장하고 영혼관에 변화를 보이면서 죽은 후에도 이승문제에 깊이 관여하고자 하는 사상이 나타난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식 상장례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조상숭배의례가 보편화되었으며, 고려시대의 사상적 특수성에 의해 도교·불교·유교식 喪葬禮가 공존한 것으로 보인다. 무속을 바탕으로 한 死者儀禮는 일반 서민층에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권력층에서는 도교·불교·유교식 喪葬禮가 혼합되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말 朱子學이 도입되면서 조상숭배사상에 의한 喪葬禮가 장려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왕과 귀족은 석실묘를 썼으며, 상류계층은 석관묘, 일반서민은 토광묘로서 흙을 덮고 작은 封土를 만든 형태가 많이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교가 불교임에도 불구하고 火葬이 성행하지 못했고, 화장 후에는 散骨하지 않고 舍骨 또는 佛舍에 안치하였다가 埋骨(骨藏制)하는 화장과 매장풍습이 병존하였다. 즉 불교식 및 유교식 장묘문화와 풍수지리사상에 의한 장묘형식이 점차 결합을 이루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국토개발연구원, 1987).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喪葬禮가 범제화되면서 조상숭배에 의한 喪葬禮, 특히 성리학적 喪葬禮가 보편화되었다. 조상숭배에 의한 喪葬禮는 招魂과 함께 조상의 神主를 이승에 모시는 喪廳과 祠堂이 중심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당이 없을 경우 단지 신주만을 4대 동안 모시고, 상청은 3년간 일상생활 공간에 모시는데, 죽은 조상에게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아침, 저녁 문안드리는 것이 조상숭배의례의 핵심이었다.

전통사회가 수행하였던 喪葬禮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喪葬禮의 절차를 크게 구분하면 亡者의 집에서 하는 의례로서 초종(初終), 성복발인(成服發靱)과 葬地에서 하는 의례로서 치장(治葬)과 흉제(凶祭)로 나눌 수 있다. 초종은 망인이 숨을 거둔 직후 屍身을 襲하고 殮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제적으로는 시신을 처리하

는 의식임과 동시에 상징적으로는 망자와 가족구성원을 분리·단절시키는 의식이다. 전통상례에서는 이 부분의 의식이 천거정침(遷居正寢), 임종(臨終), 속광(屬纊), 고복(梟復), 사자상(使者床), 수시(收屍), 혼귀상자(魂魄), 발상(發喪), 입제주(立祭主), 부고(訃告), 전(奠), 습(襲), 소렴(小殮), 영좌(靈座), 대렴(大殮), 입관(入棺)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우선 臨終에서 질 높은 죽음을 정의하고 있다. 죽음이 가까워 오면 평상시 거처하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방의 북쪽에 눕힌다. 이 때 자녀로서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죽는 이로서는 자녀가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집안에서 죽지 못하는 경우를 客死라 하여 가장 허무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그런 식의 죽음을 맞게 될 상황을 가장 경계하였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제도화된 상례의 규범을 통하여 전통사회의 한국인들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의 기초를 부모자식간의 유대라고 재확인하였다.

四禮便覽(1884)에서는 상례의 초기단계인 初終, 즉 殞命에서 殮襲까지의 절차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시신과 영혼을 한 데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가령 初終中の 시신건기에서 시신을 칠성판 위에 올려놓은 다음 죽은 자의 두 손과 발가락을 가지런히 한 다음 백지로 묶어둔다. 물론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시신의 수족이 오그라들거나 뒤틀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신에 영혼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즉 제대로 된 상례를 거치지 않은 채 영혼을 돌아다니게 하면 구천에서 방황하다가 가족이나 지역공동체에게 해를 입힌다고 믿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례절차를 통하여 어떤 영혼도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은 살아서건 죽어서건 가족공동체나 친족공동체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키

9) 전통적 상례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장철수(1995), “傳統的인 冠婚喪祭 研究”, 『한국의 관혼상제』, pp.150~170을 참조바람.

기 위한 것이었다.

入棺이 끝난 뒤 관이 집을 떠날 때까지의 과정이 성복발인(成服發靱)이다. 전통상례에서 이 과정은 성복제(成服祭), 조상(弔喪), 발인제(發靱祭), 노전제(路奠祭) 등으로 구성되나 현재에는 성복제(成服祭), 조상(弔喪), 발인제(發靱祭)가 행해지고 있다. 성복(成服)은 전통 한국인에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절차로 대렴(大殮)이 끝난 다음 오복(五服)의 사람들이 각각 해당되는 상복을 입고 서로 조상(弔喪)하는 의례를 말한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직계가족의 원리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五服을 통하여 친척 상호간의 거리의 가까움과 멀음을 따짐으로써 집안의 구심점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成服祭는 상을 당한 집안으로서 사회적 신분을 정식으로 갖게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五服을 입는 사람끼리의 친족공동체로서의 동질의식을 느끼는 과정이기도 하다.

반곡(反哭), 우제(虞祭), 부(祔)도 중요한 내용을 내면화하고 있다. 반哭이란 장사를 지낸 다음 혼을 본가로 다시 데려가는 절차이며, 虞祭는 시체를 매장한 다음 그 혼이 방황하는 경우를 염려하여 드리는 제사이며, 祔는 졸곡(卒哭)후 죽은 자를 비로소 조상신으로 포함시키는 의례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의례가 갖는 사회적 가치는 孝에 대한 각성이다. 효에 대한 도덕적 감성을 일깨우기 위한 의례는 죽은 자를 위하여 제물을 바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영혼이 살아있다고 믿건 말건, 또는 죽은 자에게 바친 제사음식을 영혼이 실제로 먹건 말건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수행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가령 初終 가운데 전(奠)이라는 절차는 고인을 생시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제물을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사자상(使者床)이라는 것도 저승사자가 고인을 편하게 모셔 가도록 마련하는 것이다. 물론 죽은 자에게 음식, 돈, 물건 등을 바치는 대신 행운, 부귀

와 같은 물질적 혜택을 반대급부로 바라는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의례가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효라는 가치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과정이라고 본다.

한편 反哭, 虞祭, 祔를 비롯하여 상례의 전과정이 의도하는 바는 시신을 성공적으로 조상신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의도하는 內面的 目的은 부계적(Patrilineal) 관계의 중요성을 각성시키고 영속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신의 조상이란 父系親을 말하는 것임을 사회화시키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모계친척이나 인척과의 관계는 죽음에 의하여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지만 부계친척은 죽어서도 신이 되어 산 자와의 관계를 영속시켜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례가 부계친척의 잔치라는 의식은 墳墓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매장하는 시신은 언제나 부계친척일뿐 모계친척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척도 아니기 때문에 가부장적 친족의식을 산 사람들끼리 자극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자면 전통사회에서 죽음을 위한 의례 즉 喪禮를 중시한 것은 무질서를 예방하고 유교적 질서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유교문화는 전쟁과 같은 외형적 피해보다는 내면적 가치관의 혼란을 더 심각한 문제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도덕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는 五禮를, 민간차원에서는 家禮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禮書들은 喪禮를 으뜸되는 것으로 삼았다. 따라서 喪禮란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수단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喪禮를 정확히 수행한다는 것은 유교적 이상사회의 핵심적 믿음체계(Core Belief) 즉, 효라든가, 삼강오륜이라든가, 또는 가족주의 등을 확인한다는 상징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즉 한국인으로서의 停滯性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었다(장현섭, 1996).

喪葬禮는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국시대 이후

조선조까지는 葬墓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규제가 없었으나 조선 초에 이르러 화장을 금하고 묘지 크기를 규제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특히 억불숭유정책으로 화장제를 강력히 금하고 매장제를 시행하는 등 儒敎的 葬墓文化가 자리잡았으며, 經國大典에는 사회계급에 따라 묘지 크기를 규제하는 墳墓禁限步數制¹⁰⁾가 법제화되어 실시하는 등 검소한 장묘문화를 이루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묘지는 특별히 금지된 구역외에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지고 풍수지리에 의한 명당선호의 성행으로 族葬制(先山)가 생기면서 도성주변과 마을 외곽지역에는 자연스럽게 조성된 묘지가 산재하게 되었다(시정개발연구원, 1997).

해방이후 서구문화와의 접촉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喪葬禮는 현세의 삶을 합리적으로 대응하려는 世俗化(Secularization)의 길을 밟으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예서에 나타난 장례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현재 실행되고 있는 장례절차는 전통적 상례가 간소화된 형태로 남아 있다. 성복제(成服祭), 위령제(慰靈祭) 등 몇몇을 제외한 장례절차는 현실적, 실용적 기능, 즉 시신처리와 사회공동체의 결속·확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 喪葬禮의 유교적인 요소는 세속적인 가치관 도입과 함께 변하여 앞으로 예의 형식성은 사라지고 실용적인 부분의 의례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방이후 葬墓制度는 ‘埋葬과墓地등에관한法律’이 근간이 되어 장례 및 묘지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의료법 및 시체운반법 등의 관련법규에서도 장묘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¹¹⁾

10) 경국대전에는 종일품의 묘지는 사면 각 100보, 이품은 90보, 사품은 70보, 오품은 60보, 육품은 50보인데 반하여 문·무관 일품의 묘지는 사면 각 90보, 이품은 80보, 삼품은 70보, 사품은 60보, 오품은 50보, 육품은 40보, 칠품 이하의 생원 진사는 육품과 같고 부녀는 남편직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원용, 1991).

‘埋葬과墓地등에관한法律’은 묘지설치 기준, 분묘면적, 각종 장묘시설의 설치 및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1961년 제정하여 2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나 전통적인 관습과 국민의식 행정규제의 미비로 많은 내용이 死文化되었다. 장묘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준수되지 않는 현행 법령의 실효성 확보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91년에는 장묘제도에 관한 지도·장려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993년에 일부 보완하여 시행하였다. 묘지의 단위면적 축소, 묘지사용기간 제한, 납골제도 보급 확대, 각종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장묘제도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묘제도를 주요 제도개혁과제로 선정하여 법령개정에 필요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쳤으며,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葬墓法 改正을 추진하고 있다.

11)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은 특히 상장례를 포함한 가정의례시 국민의 허례허식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의례절차, 의례장소 및 서비스 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산림보전지역 및 집단묘지 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은 묘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은 광역시설 및 공공시설로 공동묘지, 화장장을, 도시계획시설로서 묘지공원을 규정하고 있다.

Ⅲ. 家庭儀禮의 現況 및 問題點

1. 家庭儀禮慣行의 實態

家庭儀禮는 1960년대 이후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과정 속에서 국민의 생활양식, 가치관,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삶의 원리를 공식화하는 과정인 가정의례는 사회변화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설명될 수 있는 상징행위라는 점에서 다양한 변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가정의례 가운데에서 婚禮와 喪葬禮를 중심으로 현행 가정의례 관행의 實態와 그 問題點¹²⁾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婚禮慣行

혼례관행의 변화는 婚姻儀禮 節次와 이에 따른 經濟費用 問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혼수, 예단, 예물과 관련된 행태’ 및 포괄적 의미에서 ‘혼인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물질적 재화의 이동’(김모란, 1994)인 婚姻去來慣行¹³⁾의 변화가 논란이 된다는 것이다.

12) 가정의례 가운데는 통과의례인 돌·백일·환갑·칠순례와 연중의례인 제례도 포함된다. 그러나 돌·백일·환갑·칠순례와 제례는 비용측면이나 절차측면에서 크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지 않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축소·변형되거나 간소화되는 추세여서 앞에서 밝힌 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13) 혼인거래관행에서 ‘거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동류혼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 가운데 계산과 연관시키는 개념으로 혼인시 물질적 이동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타산적 교환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에서 사용되었다.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혼례관행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한국사회의 婚需와 禮物 마련의 절차가 외형상으로는 전통적 절차를 따라가는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 부부중심의 핵가족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혼가구의 주택마련이 보편화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은 신랑측이 주택을 마련하고 살림살이 장만은 신부측이 부담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마련은 주택 및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부담이 되긴 하지만 家族關係의 역학상 신랑측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정될 수 있고 당사자의 재산이 되는 반면, 신부측의 신혼살림장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즉 신부가족의 경우 신혼살림 장만과 혼수가 혼인을 위한 반강제적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신랑의 지위나 조건 또는 노골적인 요구에 의해 영향을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에 와서는 신부측이 주택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향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¹⁴⁾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식적 요구 또는 의식적 요구가 없더라도 상대의 객관적 조건에 의해 신혼살림 장만과 혼수가 결정된다면 이는 變質된 의미의 禮物交換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신랑과 그 가족에 대한 禮物의 肥大化이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신부측의 시대측에 대한 예물과 예단 마련이 婚姻의 核心的 節次로 부각되고, 신랑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배경에 대해 신부측이 婚需, 禮物, 禮緞의 형태로 ‘신랑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일부 부유층에서는 물질만능주의와 과시욕으로 인한 豪華婚需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의

14) 저축추진중앙위원회,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보고서』, 1993과 소비자보호원,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에 이같은 내용이 조사된 바 있음.

혼인에 있어서 반드시 신랑측의 의식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신랑의 지위에 대해 신부측이 물질적 지불을 하는 交換의 原理가 일부 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社會原理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김모란, 1994).

앞에서 혼례란 문화적으로는 하나의 통과의례로서 사람의 일생에서 미혼의 단계와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단계간의 移轉을 당사자들에게는 물론 주위의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문화적 상징행위로서의 특질을 지니며, 사회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범위를 확인하고 결속을 높이는 집단결속의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혼례의 두 가지 의미 혹은 기능은 현대의 도시화된 산업사회에서도 변함없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태로서 婚禮의 모든 構成要素가 이러한 의미 혹은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에서는 최근에 실시된 혼례관련 의식 및 실태조사 자료들을 종합하여 婚禮의 구성요소별 태도와 실태를 분석하고 問題點과 變化方向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¹⁵⁾

1) 約婚式

약혼식을 치르는 것이 좋으나 혹은 직접 결혼식으로 직행하는 것이 좋으나를 놓고 근래에 들어와 사람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15) 여기에 인용하는 자료의 출처는 1997년 2월 서울방송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자료 및,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1996년 10월 및 1997년 6월 조사 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1997년 10월 조사자료이다. 서울방송의 경우 사례수는 600명이며,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조사의 경우 사례수는 1996년의 경우가 총 1,000명이며 1997년의 경우가 총 1,018명이고,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의 경우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각각 1,200명의 사례와 800명의 사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세 조사 모두 남녀별, 연령별, 미혼과 기혼의 비율에 따른 층화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당사자와 부모의 조사를 병행하였다. 또한 세 조사 모두 혼례의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혼례관련 의식 조사를 함께 하였다.

보인다. 便宜主義를 강조하는 세태를 볼 때, 번거롭게 별도의 의례를 치르는 것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는 관행의 하나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당사자들간의 결합을 확인하는 과정을 첨가하고 또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效用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손승영, 1997).

약혼식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약혼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방송의 조사 결과 약 80%가 불필요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도 약혼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연애결혼의 경우 약혼식을 생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반면, 대부분의 약혼식은 중매를 통하여 만난 경우 상호간의 적응을 위한 기간을 가지면서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압도적 다수가 약혼식을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약혼식이 불필요한 번거로운 절차라고 생각하여 생략하려는 경우가 많으며, 金錢的인 負擔 또한 약혼식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약혼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실제 사람들의 행태에도 반영되어 조사 대상자중 약혼식을 한 경우는 약혼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13%), 특기할 점은 약혼식이 점차로 所得上流層의 制限된 文化로서만 잔존하는 관행이 되는 듯하다는 점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상류층의 경우에도 신랑가와 신부가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클수록 약혼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크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사한 경우 약혼식을 생략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約婚式의 主管 및 費用을 신부가에서 부담

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사회경제적으로 지위의 격차가 나는 결혼의 경우 약혼식을 생략하면 신부집의 체면이 손상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약혼식을 지지하는 경우에도 결혼 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신부의 부모들이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즉, 상류층의 경우 혹은 중매의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약혼식이 치러지는 관행을 보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연애에 의한 배우자 결합의 관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부모의 의견보다 결혼 당사자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더해 가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중류층 및 하층의 경우 최소한 신랑가와 신부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동류결혼의 경우 약혼식의 관행은 쇠퇴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약혼식을 지지하는 이유로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양가 어른들께 인사하는 것이 예의’라는 답변이 압도적이다. 이는 앞으로 연애에 의한 배우자의 만남이 증가한다고 해도, 결혼 이전에 양가의 부모 및 가까운 친지에게 결혼 전에 인사해야 할 필요성은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친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양가의 친지에 대한 결혼전 인사의 필요성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公式的인 儀禮로서의 약혼식 대신, 양가의 부모와 당사자들이 모인 비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양가의 부모님에게 결혼당사자 및 당사자의 부모가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의 관행만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2) 函들이

函은 전통적으로 四柱單子를 전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신랑 및 신부의 주변인들에게 결혼을 확인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현대에 와서는 함팔기 형식으로 약간 변

형되어 신랑 친구들에게 놀이마당을 제공하는 형식을 지니기도 한다. 함들이 관행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약혼식보다는 못하지만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방송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 쪽이 더욱 높았으며(5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0%가 예식절차상 불필요한 우선 선택 항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자보다는 남자의 경우, 기혼자나 부모보다는 미혼자의 경우 함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함들이 관행에 대한 일반의 집착정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함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가족이나 사돈이 반대할 경우 안한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갈수록 함값이 높아지고 신랑친구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흥정의 번거로움이 일반적으로 인식되면서 新郎이 직접 四柱單子를 들고와 전해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함사려’를 외쳐대면서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는 민속행사로서 함들이 관행은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파트라는 주거환경으로 인한 제약 및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현대인들에 의해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함들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함들이 자체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기보다는 단순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례를 따를 뿐이라는 소극적인 응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함값에 따른 실랑이가 문제시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함들이 慣行이 衰退되는 쪽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禮緞 및 禮物

禮緞은 신랑 및 신부가 상대방의 부모 및 가까운 친척들에게 ‘앞으

로 잘 부탁한다’는 하나의 인사치레로서 선물로 申告하는 節次라고 볼 수 있다. 家父長的 家族文化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체계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따라서 신부가 새로이 ‘들어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할 부담은 신랑보다 더 크다. 禮綴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견해도 소수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禮綴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물로서 인사하는 관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 것이 좋은가? 서울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신부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신랑의 부모에게만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약 30%를 차지하며, 신랑의 친형제 자매까지로 제한하자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약 70% 이상이 直系의 형제자매를 넘어서는 禮綴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禮綴의 範圍를 제한하자는 의견은 보다 뚜렷하여 조사대상자의 거의 전부(96%)가 신랑신부의 부모에게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행태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약 과반수(52%)가 상대방의 부모 및 형제자매에게까지 禮綴을 했거나 할 계획으로 응답하고 있다.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친척의 범위가 매우 좁혀지고 있다. 특히 핵가족화에 따라 결혼을 친척을 포함한 확대된 가족 전부의 행사로서 인식하기보다는 핵가족 범위 내에서 주관되어야 할 행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禮綴의 對象도 핵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앞으로 예외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禮綴의 形態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방송 조사의 경우 예단을 현금으로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찬성 74%, 반대 26%), 실제로 예단을 현금으로 보내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94%). 현금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사돈택 마음에 들기 위해서’ 또는 ‘편해

서'가 대다수의 응답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便宜主義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금으로 선물을 한다는 것은 선물의 實用的인 면을 극도로 추구하는 반면, 상징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경시되는 추세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禮緞의 範圍가 결혼 상대자의 부모 및 직계 형제자매에게로 제한되고 禮緞의 形式도 현금의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는, 예단의 경우도 다른 혼례 절차와 마찬가지로 의례로서의 象徴性을 상실해 가는 경향의 일부이다. 이는 거꾸로 상대방의 부모 및 형제에게 간소한 선물은 별도로 하고, 본격적인 예단은 사실상 신랑가와 신부가 결혼관련 비용의 조달을 위하여 상호 자원을 교환하는 실용적 기능으로서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禮物는 결혼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교환하는 선물이다. 예물 그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나, 禮物의 內容에 있어 비실용적인 물품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적지 않다. 불필요한 물건의 일순위로 지목되는 품목이 다이아 반지인데, 재미있는 점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신랑과 신부의 과반수 이상(신랑의 63%, 신부의 68%)이 다이아 반지를 선물하고 있으나, 이보다 더 많은 비율의 응답자(70%)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가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면서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體面文化에서 부분적인 대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가 다이아 반지를 선물할 것을 염두에 둘 때 얼굴이 깎이지 않기 위하여 본인도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게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이러한 동일한 사고 과정에서 다이아반지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交換行態를 一般化시킨 機制일 것이다. 이러한 체면문화에 바탕을 둔 태도와 행동의 불일

치는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의견을 상호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짐으로써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연애의 경우보다 중매의 경우 예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의 반영으로 보인다. 즉, 양가를 잇는 架橋 役割을 하는 결혼 당사자들이 양가의 의견을 원활히 교환하고, 또한 당사자가 다이아반지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러한 사고와 행위의 불일치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4) 結婚式

과거 전통사회의 경우 結婚式은 지역 공동체 모두의 행사로서 친척, 친지, 친구, 이웃 등이 함께 모여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祝祭行事로서 경제력이 허락하는 한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그 반면에, 이러한 축제행사를 거행할 비용이 없는 경우 결혼을 못하거나 혹은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동거하여 사는 경우 또한 매우 흔하였다. 요즘에도 결혼식을 치를 비용이 없는 저소득층 사람들 중 법적으로만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경우를 주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박숙자, 1991).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은 단순히 간소하게 치러진다고 하여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신랑, 신부 당사자 및 양가 집안의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소규모 축제를 통하여 祝賀와 確認을 받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절차로 기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東西洋 혹은 과거와 현재를 가릴 것 없이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현재 거행되는 결혼식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사항들이 반드시 간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결혼식이 반드시 簡素化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현재 거행되는 결혼식 장소를 보면,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상업예식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61%), 商業禮式場에 대한 결혼식 장소로서의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계층간 예식장의 선호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호텔이나 유명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예식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結婚의 象徵性和 敬虔性을 도모하기 어려운 분위기의 상업예식장은 앞으로 점점 더 선호의 대상에서 멀어질 것이다. 현재와 같이 판에 박힌 절차를 치르면서 30분 이내에 성급히 결혼식을 끝내야 하는 환경 속에서 신랑신부가 축하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상징성과 경건성이 담긴 충만감을 맛보기란 매우 힘들며, 대신 무언가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되면서도 존엄성의 상실감, 피로감과 허무감 등 부정적 느낌을 맛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람들은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 한 상업적 결혼식장에 대한 代替的인 장소로서 음식점, 종교시설, 공공시설, 야외 등 새로운 儀禮의 場所에 대한 開發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편의주의의 확대에 따라 혼례를 하나의 ‘치루어 버리는’ 절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은 앞으로 보다 높아질 것이나, 현재의 상업 예식장이 의례의 상징적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는 한 상업예식장 이외의 장소가 차지하는 혼례장소로서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5) 披露宴

일반적으로 “언제 국수를 얻어먹게 되느냐”는 인사가 언제 결혼하느냐는 인사에 갈음할 만큼 結婚式과 함께 모여 나누어 먹는 儀式과의 연관은 매우 밀접하다. 옛날 농촌사회에서 결혼식이라고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신랑 및 신부집 마당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한 길

가는 길손에게까지 접대를 하는 우리의 전통 풍습을 생각할 때, 현재의 예식장에서 벌어지는 披露宴 文化는 실질에 있어 과거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결혼식 후의 피로연은 성대하게 치르는 경향이 있으며, 결혼 당사자 및 가족과 하객들이 함께 모여 결혼을 축하하고 상호간 인간적 우애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방송의 의식조사에서도 披露宴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다수의 사람들(71%)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실제에 있어 피로연을 하지 않는 결혼식은 매우 희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로연을 결혼식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은 결혼식 관련 비용의 구성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당일 禮式 總費用에서 피로연이 차지하는 비용의 비율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피로연의 필요성에는 세대의 차이를 떠나서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현재 상업 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른 이후 진행되는 피로연에 대하여는 그렇게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披露宴 실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원인이 하객 일인당 식사비용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왜냐하면 서울방송의 조사 결과 일인당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식사비용이 12,000원 수준인데 실제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경비 또한 여기에 근접하기 때문이다.¹⁶⁾ 이보다는 현재의 披露宴 文化가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인 형식에 휩싸여 피로연 본연의 축하 연회적

16) 물론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수준만의 비교이므로 이러한 추론이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소득수준이 낮아 바람직한 피로연의 비용 수준을 12,000원 이하로 잡은 경우가 다수 있을 테고, 소득수준이 높아 바람직한 피로연의 비용 수준을 12,000원 이상으로 잡은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12,000원 이하의 실제 경비가 들어도 기대수준 이상이 될 경우 불만을 느낄 것이며,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 또한 12,000원 이상의 실제 경비가 들어도 기대수준 이상이 될 경우 불만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격 즉 의례로서의 象徴的 意味를 喪失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披露宴으로서의 象徴性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축의금을 받은 데 대한 실용적인 교환의 의미로서 피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사 결과, 피로연을 하는 이유로 ‘하객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므로’라는 의견이 절반이나 차지하며, ‘하객의 부조금에 대한 답례’라는 의견의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친목도모’라는 의견에는 8%밖에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 披露宴의 必要性에 대하여 사람들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피로연에 대하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피로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披露宴의 環境을 造成해 가는 쪽으로 앞으로의 변화 방향이 모아지리라 생각된다. 결혼식 장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상업예식장에서 예식을 치를 때 수반되는 피로연 관행을 음식점, 종교기관, 야외의 장소 등으로 새로운 장소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다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6) 幣帛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신식 혼례절차 중 가장 전통적인 구식혼례의 요소가 남아있는 절차를 꼽으라고 한다면 幣帛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폐백은 새로이 결혼을 한 신랑 신부가 부모 및 가까운 친척들에게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드리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가족제도하에서 신랑 측의 부모 및 친척들이 幣帛의 對象이 된다.

서울방송의 조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서 모두 幣帛의 必要性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다(서울방송, 84%; 한국소비자보호원, 65%). 또한 폐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

람들 중 가족이나 사돈이 반대시에도 하겠다고 응답하는 비율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폐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세대간 폐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큰 격차가 발견된다. 부모세대의 경우 폐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압도적인 반면(90%), 연령이 낮아질수록 폐백에 대한 긍정적 견해의 비율은 낮아진다.

폐백의 필요성과는 대조적으로 幣帛의 對象에 관하여는 전통과는 달리 신랑, 신부집 모두에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82%). 특이한 점은, 젊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이든 부모 세대의 경우에도 신랑신부집 모두에게 하는 것이 좋다는 개방적인 의견을 가진 경우가 신랑집에서만 하는 것이 좋다는 전통적 태도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신랑, 신부 모두에게, 67%; 신랑집에게만, 34%). 또한 幣帛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세대, 성, 소득별로 차이가 없이 거의 대부분이 친지들에게 인사드리는 傳統的 慣禮라고 보는 견해가 강하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폐백의 관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용이하게 해 준다.

7) 新 婚 旅 行

新 婚 旅 行은 새로이 결혼한 부부가 기존의 삶의 범위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둘만의 시간을 갖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상으로 부터의 분리와 회귀라는 통과의례적 意味를 갖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결혼식 절차 중 결혼 당사자에게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절차의 하나이다. 조사 결과, 신혼여행에 의미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신혼여행을 안간 경우에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과다한 소비풍조로 호화 신혼여행의 경우가 문제인데, IMF외환위기

가 터지기 이전에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해외로 신혼여행지를 희망하는 비율이 미혼자들의 60~70%에 달한다. 반면 부모의 경우 海外旅行을 선호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한편, 경제적 능력이 허락하는 한 신혼여행에 많은 經費를 쓰고자 하는 의견이 높다. 앞으로 혼례관련 결정에서 부모와 대비하여 결혼 당사자의 의견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신혼여행이 혼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表 III-1〉 結婚禮式의 認識 程度

(단위: %)

혼례항목	반드시 필요	대체로 필요	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계 (사례수)
약혼식	2.3	13.0	17.5	44.0	23.2	100.0(1,200)
합	8.4	27.6	23.4	26.5	14.1	100.0(1,200)
예단	8.2	35.7	24.6	23.0	8.4	100.0(1,200)
예물	13.2	43.6	24.6	14.4	4.2	100.0(1,200)
청첩장	29.1	45.6	14.3	7.9	3.2	100.0(1,200)
축의금	16.0	46.1	23.9	10.0	4.0	100.0(1,200)
폐백	23.6	40.6	20.7	9.9	5.3	100.0(1,200)
피로연	18.2	46.9	19.6	10.7	4.6	100.0(1,200)
해외신혼여행	4.0	14.9	29.6	30.1	21.3	100.0(1,200)

資料: 한국소비자보호원, 『혼례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1997. 10.

8) 結婚費用

婚姻은 상징적 측면에서도 人倫之大事이지만 비용의 측면에서도 매우 큰 지출이 요구되는 일생의 사건이다. 婚姻의 總費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비용을 제외한 純粹 婚禮關聯 費用으로 약 3천4백~3천8백만원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⁷⁾ 이를 도시근로자

17) 1996년에 조사한 저축추진중앙위원회 조사에서는 3,290만원, 1997년에 조사한 한국 소비자보호원 조사에서는 3,679만원, 서울방송 조사에서는 3,800만원으로 나타난다.

의 月平均所得의 배율로 환산하면 약 15~1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주택마련 비용으로는 순수 혼인관련 비용보다 약간 더 많은 3,860만원을 평균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순수 혼례관련 비용을 보면 신부가 전체의 61~65%를 부담하고 신랑이 나머지 약 35~39%를 부담한다. 반면 주택마련 비용을 보면 신랑이 전체의 81%를 부담하고 신부가 나머지 19%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마련 비용을 고려한 結婚 總費用을 놓고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직후 分家의 비율이 78%나 되는 현실에서 신랑 측의 주택마련 비용 부담으로 인한 婚禮 總費用의 신랑 신부간 불균형은 양측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신부측 혼수비용 부담규모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結婚費用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모든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결혼비용이 바람직한 수준을 넘어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또한 순수 혼례관련 비용의 적정수준에 대하여 신랑가와 신부가를 합하여 1,600만원 정도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結婚費用 중 父母가 부담하는 비율은 혼수비용 및 주택비용 모두 70%에 달하며 조사에 따라서는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서울방송 조사), 이러한 차이는 扶助金의 비율을 어디에 포함시키는가의 차이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결혼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향의 반영으로, 결혼비용 규모의 결정 주체도 본인보다는 부모 혹은 부모와 본인의 상의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순수 혼례관련 비용과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연애결혼의 경우 결혼 비용은 중매결혼의 경우 보다 평균적으로 15%나 적게 소요된다는 점이다. 신랑과 신부의 이해의 정도가 깊은 경우 상호간 체면을 위한 비용의 지출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男女間의 社會經濟的 水準이 비슷한 경우가 격차가 큰 경우 보다 혼례관련 비용이 적게 드는 경향에도 반영된다.

전통적으로 살림마련은 신부측에서 주택마련은 신랑측에서 하는 역할 분담의 구조가 앞에서 논의했듯이 과도하게 신랑측에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인하여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림 마련과 주택비용의 兩家 共同負擔 慣行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살림마련을 신부측에 전담시킨다는 전통관행에 대한 지지는 매우 미약하며(15%), 또한 주택마련 비용을 신랑측에 전담시킨다는 전통관행에 대한 지지 역시 미약한 것으로 드러난다(34%). 대신 살림마련을 兩家 共同으로 하자는 의견에는 76%가 찬성하며, 주택마련을 양가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의견에도 58%가 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부에게 과도하게 살림마련 비용이나 예단비용 등을 요구했던 관행이 남녀간의 비현실적인 비용부담 현실에 대한 왜곡으로 표현되었다면, 앞으로 살림마련과 주택마련에 대한 兩家 共同의 分擔原則이 뿌리를 내리면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왜곡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새로운 한 가정이 탄생하기 위해 과연 얼마만큼의 결혼비용이 들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婚禮費用은 피로연, 신혼여행 등에 드는 혼인절차비용 등 直接費用과 혼례참석 기회비용, 교통혼잡비용 등 間接費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혼수와 예단, 예물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고급화되어가고 있으며, 피로연, 해외신혼여행, 야외사진촬영, 이벤트 행사 등 新種 高費用禮式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청첩행위 남발로 세과시의 부작용이 확대되고 주말 도심예식의 집중으로 예식장주변의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1997)이 조사한 연간 혼례관련 총비용은 25조 2,858억

원이며, 혼례 1회당 소요비용은 7,539만원으로 나타났다(순수 혼례비용 3,679만원). 이는 199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35.1배 수준이며, 1인당 GNP의 8.9배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表 III-2〉 婚禮關聯 費用規模 推定

구 분	1회당 평균 비용(만원)	총비용(억원)	구성비(%)
총 계	-	25조 2,858억원	100.0
직접비용	7,539만원	23조 8,090억원	94.2
- 혼수비용	2,371만원	8조 1,325억원	32.2
- 의례비용	1,308만원	4조 4,862억원	17.7
- 주택마련비용	3,860만원	11조 1,901억원	44.3
간접비용	-	1조 4,768억원	5.8
- 혼례참석비용	-	1조 3,483억원	5.3
- 교통혼잡비용	-	1,285억원	0.5

資料: 한국소비자보호원,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 10.

혼례 총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과 실제 지출행태간의 괴리현상에 대하여는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寡消費 風潮와 맞물려져 있기 때문이다. 단, 신부의 결혼비용지출 중 비실용적 예단이나 과도한 살림살이 장만에 쓰여지고 있는 부분은 주택마련 비용의 共同負擔 慣行이 확산됨에 따라 감소되는 대신 주택마련 비용 쪽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애 결혼의 경향이 높아지면서 結婚費用의 減少를 예측할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례비용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신랑과 신부 및 양가집간의 결혼전 이해의 정도를 높여 상호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체면유지를 위한 소모적 비용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葬墓慣行

장례관행의 변화를 살펴보면 직업적인 葬儀師 출현, 殮襲과정과 成服祭의 간소화, 三虞祭, 卒哭祭, 小喪 및 大喪의 소멸, 火葬 및 納骨制의 등장 등 전통적인 장례형식에 비하면 매우 간소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해방이후 서구문화와의 접촉을 거치면서 장례는 세속화의 길을 밟게 되었으며, 장례절차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생활조건이 변화하면서 외향적으로 합리화 및 간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장철수, 1995).

1) 葬禮場所의 變化

장례장소는 자택에서 장례를 지내는 사례가 1985년 75.3%에서 1995년 37.5%로 감소한 반면 병원에서 장례를 지내는 비율은 19.6%에서 60.6%로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病院靈安室 이용이 확산되고 1990년대에 들어서 급속히 증가했음을 읽을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자택에서 사망하는 비율은 55%에 불과하며,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이 6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더구나 1995년 이후 병원영안실을 葬禮式場으로 양성화하면서 병원장례식장의 이용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투병하다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자택으로 퇴원하는 전통적인 관행은 점차 퇴조하는 반면, 事故死의 증가와 임종시에 병원으로 입원하는 현상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사고사는 客死로 인식되어 정상적인 장례의 절차를 밟도록 기대되지 않았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장례장소가 집 밖의 장소, 보다 구체적으로는 病院葬禮式場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

18) 1985년에서 1995년에 걸친 10년 동안 일간신문의訃告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이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하겠다.

장례장소에 있어서 病院靈安室 이용이 급속히 확대된 원인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시설 이용의 증가가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화에 따른 居住空間의 狹小化, 즉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확산으로 집밖에서 장례를 치루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둘째, 核家族 理念의 확산으로 생활영역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장례는 가족의 영역 밖에서 치루어지기를 바라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 전반에 걸친 便宜主義의 擴散은 장례에 있어서도 죽음을 애도하고, 슬픔을 위무하는 장례의 본래의 의미는 희박해지고 일단 치루어 내어야 하는 절차로 변질되게 되었다(이현송·이필도, 1995).

葬禮慣行은 전국 각지의 風習과 慣習, 그리고 宗教에 따라 통일된 양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장의용품을 비롯한 장의관련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됨에 품질, 가격 등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크다. 장례에 관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합리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데 특히 형식적인 弔問으로 인한 경건한 장례가 되지 못하는 점과, 음식 대접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위생상의 문제, 유족 및 조문객들이 활용할 공간 부족, 자신들의 勢誇示와 낭비적인 요소로 인한 違和感 造成 등은 장례관행에서 시급히 탈피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問喪을 가서 밤샘을 해주는 풍습은 슬픔을 당한 상가에는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도시화,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문상으로 밤샘을 해야한다는 것은 문상객으로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상가측에서도 술과 음식을 접대해야 하는 일손과 그에 따른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변화의 요구로 인하여 밤샘을 하는 問喪慣行은 점차 사라져 갈 것으로 예측되며, 1990년대에 들어

와 그러한 조짐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 墓地 및 火葬에 대한 認識 變化

예로부터 우리 사회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남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永續시키고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인 孝親思想을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정성스럽게 묘지를 조성하였다. 전통적 조상숭배사상으로 성대한 장례를 치루고 명당자리에 묘지를 써야 자손이 번성할 수 있다는 인습이 뿌리깊게 내려오고 있다. 민간신앙으로 만연한 풍수지리사상에 따라 자손들은 조상의 혼백(魂魄)이 저승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하기보다는 어디에 묻히나에 더 강한 관심을 보이게 된다.

이는 조상묘지에 대한 인식이 風水地理思想을 따르며 ‘자식된 도리’로 조상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온 가족이 만나는 장소로도 이용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돌아가신 분과 살아남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영속시킴으로써 孝思想 및 祖上崇拜思想을 가족의 핵심적인 가치로 내면화하여 왔다. 죽은 자의 사후 안식처인 묘지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사이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소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여겨왔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集團墓地보다는 個人墓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되었다.¹⁹⁾

이러한 매장위주의 墓地選好 慣行이 지속됨에 따라 해마다 여의도보다 넓은 면적의 국토가 묘지로 변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저해함은 물론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금수강산이 병들고 있다. 1997년말 현재 전

19) 개인묘지의 선호의식은 개인묘지 점유율이 70%를 넘고, 분묘 1기당 평균면적이 15평이 넘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오홍철, 『화장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장묘 문화 발전방안 공청회』, 1992.

국의 묘지면적은 약 996km²(전 국토의 1%)이고 분묘수가 19,980,000기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약 20여 만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는 실정이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향후 수도권은 3년, 전국적으로 10내외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묘지를 쓰고 싶어도 더 이상 쓸 수 없으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묘지를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매장해야만 효도한다는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화장은 후손이 없거나 무연고자, 저소득층의 경우에만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두 번 죽이는 것 같다’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화장을 기피해 온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火葬率은 1975년 12.4% 이후 조금씩 증가되어 1992년 18.4%, 1997년에는 22.9%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⁰⁾ 이는 본인이 화장을 원하더라도 실제 장례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고 전통적인 관습과 풍수사상, 종교성 등에 영향을 받아 埋葬選好 意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례 당시에는 정성스럽게 매장을 해 놓고, 그 이후는 묘지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無緣故墓地로 남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²¹⁾ 의식적으로는 화장을 수용하면서도 자신과 부모를 위시한 직접적으로 가까운 가족에 대한 화장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장례방법에 관한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과의 괴리현상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 참고적으로 외국의 경우 화장률은 일본이 97%, 태국 90%, 영국 6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방안』, 1997.

21) 전국에 산재해 있는 무연고분묘가 전체 묘지기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복,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청회』자료, 1998. 9.

〈表 III-3〉 年度別 火葬推移

구분\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인구(천명)	35,287	38,197	41,056	42,793	45,612	45,991
사망자(천명)	254	256	252	248	245	247
순화장률(%)	12.4	13.9	14.7	17.5	22.0	22.9

資料: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내부자료, 1998.

그런데 최근에 들어 화장 및 납골에 대한 認識이 變化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조사결과²²⁾에 따르면 墓地에 대한 問題點으로는 ‘매장으로 인한 묘지부족’(38.5%)과 ‘호화묘지 조성’(27.7%)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응답한 비율도 17.8%나 되었다. 대부분이 묘지와 관련한 문제, 예를 들면 비용을 둘러싼 묘지서비스업자와의 쟁의와 같은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묘지자체가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묘지문제를 물리적 또는 물량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를 물리적 또는 물량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응답자들이 스스로 답해주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 나오는 묘지문제 해결방식과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화장수용 태도로 이어지고 있음이 보여진다.

즉 묘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선호하는 방식은 ‘매장으로 화장으로 바꾼다’가 36.7%, ‘시민운동으로 국민의식을 바꾸도록 한다’와 ‘사회지도층부터 건전하게 실천하도록 한다’가 각각 24.4%, 20.8%로 응답되었다. 즉 묘지문제를 묘지부족을 심각하게 인식한 사람들은 대부분 火葬으로 변경을, 호화묘지 조성과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을 문제삼는 사람들은 시민운동전개나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해결방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8년 10월에 전국에 있는 일반인 1,010명을 지역비례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으로 표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장묘제도에 관한 의식과 태도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책으로 선택하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火葬을 收容하겠다는 비율은 전체의 65.2%였다. 전체의 2/3가 화장에 대한 찬성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하는 비율은 21.8%였고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비율도 13.0%나 되었다.²³⁾

〈表 III-4〉 火葬收用與否

구분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계 (N)
전체	65.2	21.7	13.1	100.0(1,010)
성				
남자	63.8	22.4	13.8	100.0 (500)
여자	66.7	21.0	12.4	100.0 (501)
연령층				
20대	63.0	21.0	15.9	100.0 (276)
30대	71.1	15.0	13.9	100.0 (280)
40대	73.8	16.9	9.3	100.0 (183)
50대	62.5	28.7	8.8	100.0 (136)
60대	48.5	37.3	14.2	100.0 (134)
지역				
대도시	69.2	15.5	15.3	100.0 (510)
중소도시	64.9	25.5	9.6	100.0 (302)
군부	54.6	32.7	12.8	100.0 (196)
교육수준				
중졸 이하	55.4	32.1	12.5	100.0 (287)
고졸	69.2	17.7	13.1	100.0 (429)
대졸 이상	70.1	17.3	12.7	100.0 (274)
종교				
불교	61.2	26.9	11.8	100.0 (338)
기독교	69.4	20.5	10.0	100.0 (219)
천주교	70.1	16.1	13.8	100.0 (87)
무교	66.1	17.7	16.2	100.0 (345)
기타종교	47.4	42.1	10.5	100.0 (19)

註: 무응답 제외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묘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원자료, 1998.

23) 1998년 5월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 생활개혁사업의 일환으로 대한주부클럽연합회에서 실시한 전화조사로는 화장찬성률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보다 조금 높게 66.4%로 나왔지만, 찬반만을 질의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화장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火葬贊成率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연령별로는 30~40대가,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이 단연 우세하였으며, 기독교·천주교가 타종교에 비해 화장을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화장을 수용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화장을 찬성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절반 이상(54.4%)이 ‘부족한 묘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화장을 택하는 비율은 17.1%와 18.8%의 비슷한 수준을 이루었다.

〈表 III-5〉 火葬贊成理由

구분	자연환경 훼손	호화묘지를 막을 수 있어서	묘지문제 해결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기타	계 (N)
전체	17.1	6.4	54.4	18.8	3.4	100.0 (656)
연령층						
20대	15.0	8.1	63.6	10.4	2.9	100.0 (173)
30대	19.6	4.5	55.3	17.1	3.5	100.0 (199)
40대	18.5	5.2	52.6	20.0	3.7	100.0 (135)
50대	14.1	5.9	45.9	31.8	2.4	100.0 (85)
60대	15.6	10.9	42.2	26.6	4.7	100.0 (64)
지역						
대도시	18.8	7.1	55.1	14.8	4.3	100.0 (352)
중소도시	15.4	6.2	51.8	24.1	2.6	100.0 (195)
군부	14.0	4.7	57.0	22.4	1.9	100.0 (10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0	6.3	45.6	32.3	3.8	100.0 (158)
고졸	19.2	6.4	53.5	17.8	3.0	100.0 (297)
대졸 이상	18.2	6.3	62.6	9.9	3.5	100.0 (198)
종교						
불교	16.6	7.3	48.3	23.4	4.4	100.0 (205)
기독교	17.8	4.6	56.6	17.1	3.9	100.0 (152)
천주교	14.8	4.9	63.9	14.8	1.6	100.0 (61)
무교	17.5	7.0	55.7	17.1	2.6	100.0 (228)
기타종교	22.2	11.1	55.6	11.1	-	100.0 (9)

註: 무응답 제외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묘제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원자료, 1998.

死後 화장을 수용하겠다는 사람들이 택하고 싶은 粉骨處理方式으로 는 ‘산이나 강에 뿌린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34.0%)을 보였으며, 다음 으로 ‘납골당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29.8%였다. ‘납골묘지 이용’과 ‘종교기관의 납골시설 이용’도 17.4%와 15.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납골묘지·납골당·납골시설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을 합치면 62.8%나 되어 화장후 粉骨을 保管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이 나타난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최근들어 骨粉을 遺骨函에 넣어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가족납골묘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으며, 점차 이러한 행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 여름,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시작된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이 범시민운동 차원의 화장 및 납골장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장묘에 드는 費用은 아직도 낭비적인 요인이 많은 데, 이는 喪葬禮에서 부담스러운 관행을 고쳐 나가기 보다 전래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喪葬禮의 본질적인 면은 소멸된 채 형식을 지키려는 생각과 함께 장묘관련 서비스업소들의 商魂까지 겹쳐 喪主는 물론 問喪客도 심적, 물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러한 장묘관행은 상류층에서 자신의 지위 확인 및 타집단에 대한 과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다른 계층에까지 확산을 가져와 장묘관행이 高費用構造로 유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례 및 묘지관행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상업주의적 형식주의에 대한 우려는 장례수요의 증가에 따른 시장규모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장묘관행과 관련한 사회계층의 심각한 分化現象은 병원영안실 문제, 묘지부족, 호화분묘, 불법 및 무연고분묘 문제 등 여러 가지 社會的 弊害를 발생시키고 있다.

葬墓慣行과 관련하여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는데 대한 마땅한 법적 제동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점이다. 장묘제도와 관련된 법률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拘束力이 없어 제동장치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의 실효성 확보 노력과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 처벌 규정만 강화하여 법 집행의 實效性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장묘제도에 있어 처벌 규정의 핵심 사항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衡平性을 유지하며, 일반적인 관행을 규제하기보다는 불법 및 호화분묘 근절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家庭儀禮準則에 관한法律’은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례절차와 허례허식화된 장례의식을 금지하고 있고 미미하나마 벌칙조항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거의 死文化된 조항이라고 할 정도로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처벌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²⁴⁾ 이는 가정의례 법률상 금지행위 가운데 전통적 관습 및 자율화에 대한 욕구와의 乖離感을 보이고, 사적인 영역인 보편화된 葬儀慣行까지 법으로 규제하려 한다는 抵抗感으로 실제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慶弔慣行의 變化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며 도움을 주고받는다.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상호 부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데 특히 혼례 및 상례와 같은 가정의례에서는 金錢的 扶助와 感情的 慰安을 통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아 왔다.

24)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허례허식행위 금지조항에는 화환 등 진열 및 명의 증여, 경조기간 중 음류 및 음식물 접대, 기관 직장 등의 신문 부고, 굴건제복 착용 및 만장 사용 등이 있으나 시행령상 화환 10개 이내 진열, 간소한 접대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선 그 일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이 그 상황에서 남을 도울 책임이 얼마나 있는가 책임의 정도를 고려 한 후, 다른 사람을 돕는 친사회적 행위에 따르는 비용과 보상을 평가하여 어떤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최현숙, 1990).

사회에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행위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른 집단들이 자기들의 가치관이 사회에서 선호되는 가치관이 되도록 하는 권력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 그 문제는 사회문제화된다. 이러한 시각에 의한 과도한 慶弔金授受의 문제는 사회의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현상일 뿐이다. 사회는 유형화된 交換關係이고 교환관계의 구조에도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부조관계의 구조에 개입이 가능하다.

우리 나라의 相互扶助 類型은 여전히 血緣이 최우선이나, 도시화 및 산업화 진전에 따라 지연 중심에서 學緣과 織緣의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더구나 학연과 직연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집단이므로 합리적, 계약적, 개인주의적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相互扶助의 기능도 점차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상부상조의 의미로 주고 받던 상호부조금이 일부 계층의 지위나 권력의 과시수단과 사회적 연결망의 확장수단으로 변질된 것도 사실이다.

혼례에 있어서 결혼 당사자 및 부모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는 賀客이다. 친지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한다는 꿈이 계속되는 한, 하객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범위의 賀客 招請이 바람직할 것인가. 집안 친지의 범위 및 개인의 사회 활동의 범위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정의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실제 어느 범위의 하객을 초청하는지 알아보자.

서울방송의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나 부모의 사업상 아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을 전부 초청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아 41%에 달한다. 私的으로 가까이 아는 영역인 ‘일가친척, 신랑신부 친구, 부모님 친구까지’로 초청의 범위를 한정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초청장을 받았을 때, 참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또한, 개인적인 親疎關係 이외에 社會的인 影響力의 力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대다수(85%)가 親熟程度에 따라 참석을 결정하는데, 나머지는 ‘과거에 경조비를 받아서’, ‘직장동료이므로’, ‘사업관계에 있어서’ 등이 참석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양 조사결과 모두 초청을 받을 경우 참석을 하는 경우가 전체 초청건수의 80~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아는 사람을 모두 초청하고 일단 초청을 받으면 대부분 참석하는 관행의 결과 남의 慶弔事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어, 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성인 남녀의 경우 일년에 결혼식으로 6.4회를 참석하고 장례식, 돌, 회갑 등을 포함하면 연평균 11.7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조사(한국소비자보호원, 1997)에 의하면 경조사에의 참여 빈도는 훨씬 높아 연평균 24회나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慶弔金을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사적으로 가까이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거나, 이름을 듣고 쉽게 누구인지 판별하기 힘든 사람들에게까지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의 연구에서 수차 지적되었듯이 賀客의 多寡로서 사회적 영향력의 범위를 판

별하려는 데서 나온 勢誇示와 體面文化 慣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례를 통한 집단의 소속을 확인하고 결속을 도모하는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한, 이러한 세과시의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과시의 관행은 의례의 의미를 희석시키며,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도록 하여 혼례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儀禮의 主管者와 사적으로 가까이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단지 참석했다는 사실만을 알리는 데, 즉 사회적 관계 유지 측면에서의 실용성에 목적이 있을 뿐 儀禮의 趣旨 및 주요 행위에 대한 象徵性에 동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의례의 당사자로 볼 때에는 별로 바람직한 하객일 수 없으며, 참석하는 하객의 입장에서라도 일단 당사자 혹은 혼주에 의하여 참석을 확인 받았으면 더 이상 남아있어야 할 의미도 동기도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의 조사에서도 하객의 40%만이 예식에 참가하고 50%는 예식에는 참석 않고 식사만 하며, 나머지 10%는 심지어 예식에도 피로연에도 참석하지 않고 祝儀金만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초청과 참가가 현재 진행되는 혼례 관행의 상징성과 경건성을 해치는 요소의 하나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들고 오는 扶助金과 그들의 참석으로 인한 勢誇示의 효과 때문이다. 부조금의 경우 중산층은 대부분 상호교환의 의미를 띠게 된다. 즉 상대에게 받은 만큼 나중에 돌려주게 되므로 평균적으로 볼 때, 得失을 비교하기 힘들다. 문제는 직업적 지위를 이용하여 초청을 간접적으로 종용하고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扶助金은 나중에 되돌려 줄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직업 활동과 관련된 부정적인 돈의 일부로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이 의례와 관련된 부정적인 돈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의 부패 현상의 한 일면으로 인식

하는 의식의 각성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弔問行爲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조문행위가 갖는 물질적 상부상조의 의미는 오히려 더 강화된 감도 없지 않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7)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총비용은 묘지구입비를 포함하여 평균 665만원이었지만 喪主를 경제적으로 돕기 위한 품앗이로 문상객들이 내어놓은 부의금은 모두 716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결과 현대 한국인 7명중에서 6명(85.9%)은 주위로부터 받은 慶弔事費 덕택에 경조사를 치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집안에 초상이 나더라도 대개의 상주들은 물질적 충격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대변하듯이 자신이 당하게 될 특정 경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저축을 들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약 6명중의 한 명(16.5%)에 불과하다. 그 만큼 경조사시에 받는 慶弔費에 依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행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慶弔文化가 歪曲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한국인의 문화적 관습으로는 訃告를 받게 되면 상대가 누구인지를 따지기 전에 問喪을 가게 마련이며 갈 형편이 되지 않으면 扶助金이라도 보내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행이 상주로 보아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적인 문상객들의 입장에서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58.7%)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적 체면치레나 주위사람을 의식하여 지출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수준이나 적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도보다 더 많은 慶弔事費를 지출하고²⁵⁾ 그로 인하여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는 실

25)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7)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회 평균 경조사비는 35,278원, 특히 친척에게 내는 경우는 89,214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 적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액수는 31,976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한국인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부조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이다. 즉 問喪行爲가 경제적 품앗이에 치우치다보니 참으로 상주의 정신적 고통과 노동력의 부족을 메꾸어 줌으로써 느꼈던 공동체적인 紐帶感은 그 만큼 줄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일부계층의 경우는 상부상조의 의미를 넘어서 문상객의 조문을 통하여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과시하고 人脈이나 社會的 連結網의 확인 및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차재호, 1993).

한편 조문의 성격이 분화하면서 동시에 弔問客의 성격도 바뀌고 있다. 전통사회의 問喪은 지역공동체나 혈연공동체의 사람에 의하여 감정적 애도와 육체적, 시간적, 물질적 도움을 종합적으로 베푸는 동네 행사의 성격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의 지역간 이동이 극심해지자 지역주민들은 익명성을 띠게 되었다. 그 결과 초상이 났을 경우도 지역공동체는 문상의 기능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친족공동체의 경우는 여전히 감정적 위로와 물질적, 시간적, 육체적 도움을 함께 주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의 친척이란 대개 은퇴한 노령의 친척이거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조직에 얽매어 있어야 하는 젊은 남자친척은 시간적, 육체적으로는 상부상조하지 못하고 경제적 품앗이 정도만 하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전통적인 문상객의 자리에는 지역공동체나 혈연공동체 대신 뒤르껀이 이야기하는 職業集團(Occupational Group)이 대신하고 있다. 즉 機械的 結束(Mechanical Solidarity)으로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사회적 조직망은 직장이나 노동조합, 동창회, 종교조직, 기타 자원조직과 같은 有機的 組織網(Organic Solidarity)으로 多元的으로 결속되어 있어서 훨씬 많은 다양한 조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문상행위를 통하여 喪主는 전통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사회전체의 紐帶感을 強化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종교집단을 제외하면 현대판 문상객의 주종을 이루는 다원적인 조직조차도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주된 방법이 물질적 품앗이라는 점이다.

물론 구성원들 사이에 시간적, 육체적 도움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哀悼와 喪主를 위로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대신 형식만 남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보기를 들자면 喪家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떠들썩한지로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3)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문상경험이 있는 사람은 70% 정도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오랜시간 상가에 머물거나 화투치기나 술로 밤샘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弔問行爲가 슬픔에 처한 유족을 외롭지 않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각자 소속된 직업집단이 있고 산업사회의 직업조직이 요구하는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한다면 문상으로 오랜 시간 상가에 머물거나 밤샘을 해야 한다는 것은 間喪客으로서의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상을 당한 측에서도 술과 음식을 접대하려면 일손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파트는 장소의 협소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²⁶⁾ 왜곡된 문상의 보기를 또 하나 들자면 거창한 화환이 몇 개 들어왔고 누가 보낸 화환인가 여부로 ‘훌륭한 상가’가 판가름나고 사회적 위세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화환을 주고받은 사람끼리의 集團紐帶感은 생길지 모르나 보다 큰 집단 즉 사회에 대하여서는 違和感을 조성하는 경우라 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상주들간에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 확산일

26)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연세의료원의 장례예식장에서는 弔問時間을 制限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적 문화전통에서 어떻게 정착할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로에 있고 경비만 지불하면 병원이나 장의업자들이 상례의 모든 과정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굳이 문상객들의 육체적, 시간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대신 經濟的 相扶相助만이 더욱 강조되리라 본다.

문제는 初喪으로 인하여 상주들이 겪게 되는 감정적 시련의 정리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을 문상객과의 情緒的 相互交換을 통하여 감정적으로 보상받고 나아가서 한편으로는 사회전체의 도덕적 감수성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경제적 품앗이의 방법 외에는 아주 가까운 가족끼리 내면적으로만 상실감을 치유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한 인간의 죽음은 가까운 몇 명의 가족들에게만 상실감을 줄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상행위의 시각에서 본 현대 한국인의 죽음의 질은 황폐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가정의례는 이에 알맞은 자연스런 적응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왔지만 기본적인 의미와 형식은 존속되고 있다. 오늘날 가정의례는 의례의 형식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지만 새로운 가정의 행복한 출발을 축복한다거나,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거나 상주에게 조의를 표하는 본질적인 면은 점차 사라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IV. 外國의 家庭儀禮制度 比較分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우리 나라 가정의례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改善方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外國의 가정의례제도를 혼례 및 장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1. 外國의 婚禮制度

가. 美國

미국의 예비 신랑신부는 결혼 전에 “혼전동의”(Prenuptial Agreement)란 것을 거치는데 여기서 주로 이루어지는 협의사항은 재산에 관련된 것이다. 서로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금전,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밝히는 절차로 이혼이나 사별, 자녀양육, 유산 등 결혼과 동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결혼식은 주로 교회나 성당에서 거행되며 친한 친구나 친지 중에서 서너 명이 들러리를 서게 되는데 이들은 결혼식에서 중요한 증인이 되며 결혼식 반지도 이들이 지니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신랑, 신부에게 건네준다. 結婚誓約도 정해진 대로 하지만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서로 상의하여 정할 수도 있다.

신혼살림은 당사자들이 직접 필요한 품목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직접 고르고 구입한다. 결혼식 당일날 신부파티(Bridal Shower)에 친구들이 신부에게 축하선물을 하는 慣行이 있는데 신부가 事前에 필요한

살림도구를 사달라고 부탁하여 합리적으로 살림살이를 장만한다. 미국도 결혼을 하게되면 친구, 친지, 부모로부터 祝儀金을 받게 되지만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축의금을 내는 이가 부담을 질 정도는 아니다. 披露宴은 규모와 화려함에서 있어서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뛰어나지만 費用은 신랑과 신부측에서 共同負擔한다.

나. 英國

영국은 결혼에 있어서도 일반인과 귀족 등 계급차이를 볼 수 있다. 일반 영국인들의 결혼은 주로 교회나 성당에서 행해지고 종교가 없는 경우 결혼등록소 등의 공공장소를 이용한다.

전통적으로 영국 결혼에는 신랑과 신부의 役割이 分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결혼식 장소 대여 등 각종 대여 비용은 신랑이 부담하고 신부는 신랑신부의 장식용 꽃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는 신랑신부가 모든 결혼식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리적인 영국인들의 특성 때문에 婚需費用을 둘러싼 문제는 거의 없으며 결혼 후 집 장만 역시 共同負擔하고 共同名義를 원칙으로 한다.

신랑신부가 원하는 혼수품목은 주위 친구들에게 품목을 하나씩 정해주어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은 ‘예단’의 개념이 없고 결혼에서 ‘금전’을 주고받는 일은 없다. 따라서 결혼축의금도 정성어린 선물로 대신한다. 신부예복은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각자의 예산에 맞추어 정하며 중고드레스를 구입해서 입기도 한다. 신랑, 들러리, 신랑신부의 아버지의 예복 비용은 신랑신부가 부담하는 것이 통례다. 결혼식은 비교적 간소하게 치러지며 서로 반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거행되는데 전통적으로 피로연에 드는 제반 비용은 신부측에서 부담한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결혼식에 드는 모든 비용은 한국 돈으로 약 700~800만원선이다.

다. 日本

결혼비용은 크게 예물, 피로연, 신혼여행, 신혼살림 장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혼수는 하지 않는다. 예물로 반지를 교환한다. 신부는 약혼반지와 결혼반지 두 개, 신랑은 한 개의 반지를 받는다. 약혼반지는 고급보석으로 하기 때문에 신랑 월급의 3개월분으로 60~70만엔 정도이다. 결혼 3~6개월전 유이노우시끼(結納式)를 거행한다. 주로 신부집에서 거행하는데 兩家가 첫 대면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때 신랑이 신부에게 유이노우긴(結納金)이란 돈을 주는데 금액은 100만엔 정도로 신부가 결혼반지와 결혼예복을 준비할 수 있다.

일본의 결혼식에도 상업성이 만연하여 회관 등의 專門式場이나 神社 등에서도 결혼식을 치르나 종교와는 상관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장식된 화려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치른다. 일본은 결혼식보다는 피로연을 더 중요시한다. 피로연은 대개 호텔에서 이루어지는데 참가인원은 30~50명 선으로 신랑측 손님이 2/3를 차지한다. 하객들은 친구 1~5만엔, 직장동료 3~5만엔, 친척 5~20만엔 정도의 祝儀金을 내며 흡수금액으로 하는 것이 전통이다. 축의금에 대한 答禮로 하객들에게 도미, 설탕, 국수를 담아 선물한다.

한국과 같은 혼수가 없기 때문에 신혼살림을 위한 가재도구는 주로 친척들에게 선물받는다. 결혼비용의 총규모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300~500만엔 정도이며 주로 신랑측이 부담한다. 신랑이 특정 직업을 가지지 못하면 대부분 월급으로 충당하기 힘들어 부모에게 도움을 받으며 때에 따라서 은행에서 결혼자금을 대출받기도 한다.

라. 濠洲

호주의 경우 결혼식비와 신혼살림 준비에 한국돈으로 평균 1~2천만원 정도가 든다. 결혼식 비용은 양가에서 반반씩 부담하는데 서로에게 주는 예물이 선물의 전부이고 축의금은 없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들이 성의껏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통례이다. 결혼식은 상류층을 제외하고 보통 교회나 공원 또는 마을 공공회관 등을 이용한다. 신혼집뿐만 아니라 가구 등의 살림살이 등을 신랑신부가 共同負擔하는데 호주는 은행융자가 쉬워서 집과 차를 마련해 놓고 조금씩 갚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혼비용으로 인한 문제는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

마. 이태리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요시하는 민족성을 지니고 있어 이태리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시부모와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가톨릭국가답게 90% 이상의 신랑신부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주로 시청을 이용한다. 성당의 경우 사용료가 있으나 시청은 무료이다.

결혼예복의 경우 귀족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전통적인 드레스를 입지만 일반 사람들은 한국처럼 빌려 입는 경우가 많다. 비용은 20~100만원 정도로 비싼 편이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평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도록 무난한 디자인으로 한다. 결혼식보다 披露宴은 호텔이나 城을 빌려서 성대하게 치른다. 혼수는 전통적으로 반반씩 부담하며 결혼식 비용도 반반씩 부담한다. 신부는 침실용품을 담당하고 신랑은 결혼반지, 식장사용료, 집을 준비한다. 신혼살림 장만을 위해서 신랑신부는 미리 내역을 작성한 후 축의금을 대신해서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선물받는 형식을 취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사례국의 혼례관행과 우리나라의 관행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表 IV-1〉 韓國과 主要國의 婚禮慣行 比較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이태리
예식장소	상업예식장 종교시설 호텔	종교시설 호텔 야외	종교시설 결혼등록소	종교시설 상업예식장 호텔	종교시설 야외 공공시설	종교시설 시청
신혼살림	신부측 부담	축의금대신 선물받음.	축의금대신 선물받음.	선물받음.	신랑신부 공동부담	축의금대신 선물받음.
혼례비용	3,7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950만원 정도	300~500만엔	1~2천만원	-
혼례비용 남녀분담률	신부측 부담 이 높음	동일	동일	신랑측 부담 이 높음	동일	동일
하객초청	300~400명	50~150명	50명 내외	예식: 10~20명 피로연: 50~100명	-	-
축의금형태	현금 3만5천원	선물형태 1만6천~ 8만원 정도	선물형태 2만5천~ 13만원 정도	현금 22만원	선물형태	선물형태
피로연 장소 피로연 형태	-식당, 호텔 -식사 또는 답례품	-신부집, 호텔 -축하연	-음식점, 호텔 -축하연	-예식장, 호텔 -축하연+ 답례품	-축하연	-신부집, 호텔 -축하연

資料: 한국소비자보호원,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에서 재정리함.

바. 外國 婚禮慣行이 가진 示唆點

선진외국의 혼례관행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혼례비용지출에 있어 낭비적인 요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미국이나 영국은 1/3 정도의 혼례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호주도 1/2 이하의 지출을 하는 셈이다.²⁷⁾ 혼례비용을 포함한 혼례

27) 물론 사례국들의 GNP 또는 GDP에 혼례비용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금액만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례국들의 경제적 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지 않기 때문에 혼례비용이 가계에 주는 부담정도는 한국이 더 심할 것으로 단순 짐작된다.

관행의 거품이 빠지지 않는 나라로는 사례를 든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최근 한국의 혼례관행이 더욱 상업성과 물리적 과시성에 편승하게 된 것은 일본의 풍조를 흉내내는 데서 발생하는 결과로 보아진다.

또한 한국과 일본만이 혼례비용의 지출에 있어서 부모의존도가 심하다. 한 가지 다른 점은 혼례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한국은 신부측이 부담률이 높은 반면, 일본은 오히려 신랑측이 높다. 이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혼례관행의 피폐함을 말해 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즉 혼례비용 지출에 있어서 부모의존도가 높으면서 주택비용에 대한 보상심리로 과도한 혼수의 요구와 신랑이 가진 사회적 신분에 대한 보상지출관행이 맞물려 신부측 혼례비용이 늘어남을 명시해 준다.²⁸⁾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사례국가들에서는 혼례비용지출에 있어서 불평등한 관행을 찾아볼 수 없다. 혼례비용 규모가 작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비용의 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혼례로 인한 비용상의 부담이나 문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례국가들에서는 혼수품이라는 것이 없거나 있더라도 결혼식 날 입는 예복과 반지 정도에 대해서 반반씩 부담하는 관행이 보편적이다. 신혼살림살이 장만에 있어서 신랑신부가 의논하여 합리적으로 목록을 정하여 친구, 친척, 동료들로부터 선물로 받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성을 띄고 있다. 이는 하객초청의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도 유사한 양태를 보여주는데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3~6배의 하객들을 초청하며 그 범위도 혼인을 진정으로 축하해 줄 사람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축의금을 기대하여 청첩장을 남발하여 혼례비용의 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데서 벌어지는 결과이다.

28) 김모란은 이를 “신랑값”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모란, “한국사회의 혼인거래 관행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9집, 1995. p.533.

또한 혼례장소를 선택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만이 호텔, 상업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다른 사례국가들은 특수층 또는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종교시설, 야외, 시청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소대여료와 같은 부대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혼례관행에 있어서 사례국들에게서 발견되는 교혼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결혼식, 예복 및 예물, 신혼살림살이 장만, 하객초청 등 모든 절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볼 때,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사례국들에 비해 혼례관행에 있어서 많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건전한 사회기풍을 따라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하겠다.

2. 外國의 葬墓制度

가. 日本

일본은 불교 및 유사종교의 영향, 그리고 철저한 법적 규제와 강력한 행정지도에 힘입어 火葬위주의 慣行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일본의 화장률은 1913년 31.5%에 불과하였으나 83년후 1996년에는 98.7%에 이르기까지 급증하였으며, 또한 1996년 현재 전국적으로 1,965개소의 火葬場과 11,914개의 納骨堂이 있다(葬儀, 1998:36~38).

이렇게 화장비율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일본의 전통적인 관습 위에 정부가 강력한 화장장려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화장을 강제함으로써 일반인에게도 화장제도의 수용을 설득·추진한 점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芳賀登, 1991: 260~265). 일본정부는 1948년 ‘墓地및埋葬取締規則’ 제정을 바탕으로 公營火葬場

을 전국에 건설하면서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장려하였었다.

일본의 화장관행은 화장후 분골을 자연에 뿌리는 散骨방식이 아니라 埋藏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시각적 거부감과 자연환경의 훼손이 없고, 亡者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한다는 인식을 주는 점과 토지활용의 극대화를 기하는 점에서 단연 우수하다.

이밖에 화장장의 현대화 노력으로 시설과 주위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화장장이 현대적 이미지를 갖추게 함으로써 화장에 대한 혐오감을 불식시킨 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장관행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최근들어 일본은 도시 주변의 사설묘지를 금하고 대신 共同墓地를 도시계획의 일부로 도입하여 墓地의 共同化 作業을 추진하고 있다(藤井正雄 외, 1993).

일본의 경우 祖上 및 死者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은 우리와 흡사하나 장묘관습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주류접대 금지, 답례품 폐지, 조문객의 범위 제한 등 장례절차의 간소화경향이 뚜렷하다. 일본의 경우도 대부분 3일장을 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殮襲의 복잡한 과정이나 조문객의 밤샘은 없으며 조문객 접대는 간단한 차와 과자 등으로 대신하고 있다. 通夜行事²⁹⁾가 끝난 다음 날 아침 告別式을 가진다. 고별식은 고인 및 상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모하는 공식적인 의례를 행한다. 통야 혹은 고별식에 참여시 香錢이라 하여 일정액의 부의를 하며 상주측은 이에 대하여 답례품을 증정하는 경우가 많다(葬送文化會編, 1993; 横山潔, 1992).

일본에서는 주거장소의 협소로 집밖에서 장의를 치르는 관행이 정착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상업적 장례식장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상업 장례예식장의 비율은 1993년 현재 전국적으로 400개소 이상이

29) 사원이나 장례예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말함.

있고 이용객수도 전체 장례의 40%를 넘어서며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된다(井上治代, 1993:98~100; 葬送文化會編, 1993).

나. 美國

미국의 경우 이민족이 혼합된 사회지만 민족 혹은 종교의 차이에 관계없이 대개 유사한 장의관행을 따르고 있다. 임종은 대부분 병원에서 맞이하며 임종과 함께 葬儀師가 소유한 장례예식장(funeral parlor)으로 시신을 운송하여 식장에서 장례의 전과정을 치르게 된다. 屍身은 防腐處理되어 조문객에게 보여주는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다. 고인 및 유족과 매우 가까운 친지들은 장례식장의 안치실을 방문하여 시신을 면접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이 관례이나 그다지 가깝지 않은 사이는 영결식에만 참석하는 것이 보통이다. 조문객은 보통 꽃을 지참하고 조문을 오며 유족들에게 부의금을 전달하는 관습은 없는 대신 증산층 이상의 경우 亡者의 이름으로 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3일에서 5일 사이의 장례가 보통이며 점차 3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永訣式은 목사가 집전하는 경우가 많으나 장의사가 주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장의문화가 장례예식장 중심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1차대전 이후로, 이전에는 집 혹은 교회에서 장례 또는 영결식을 치르고 교회 부속 묘지에 매장하는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장례예식장의 확대를 가져온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도시화의 결과 주거지역에서의 장례 수행이 부적절하게 되었다는 점과 시체의 방부처리를 위하여는 장의사가 상주하는 장례예식장에 시신을 일정 기간 두어야 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葬禮의 世俗化와 葬儀師의 職業集團化의 결과로 장례가 본래의 의미는 탈색된 채 과도하게 화려해진다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장례비용의 합리화와 장례의식의 간소화를 부르짖으며 실용적 및 종교적 가치가 없는 관행인 시신방부처리 행위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있고, 장의사 단체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장례공제조합이 많이 결성되었다(Mitford, 1978:259~282).

인구에 비해 넓은 국토를 가진 미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주로 埋葬을 하고 있다. 토착민은 주로 농장이나 집가까이에 매장하고 청교도 이주민들은 주로 교회묘지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미국 50개주에 535,000여 개의 공·사립 묘지들도 앞으로 20년 이내에 모두 폐쇄하여야 할 위기에 놓여 있음을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강원석, 1990). 묘지 가운데 5%는 국립·주립·시립묘지이고 나머지 사립묘지 가운데 17%는 교회묘지이다. 관의 크기만큼 땅을 파서 묻고 그 위에 대리석 등으로 뚜껑을 닫는 형식을 취하므로 묘지면적도 우리의 封墳墓에 비해 1/3 크기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전원묘지, 잔디묘지, 지상에 건립된 ‘死者의 아파트’³⁰⁾에도 매장하고 있다. 화장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도 대부분(전체의 약 92%)은 매장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묘지의 한계성으로 미국도 화장제도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다. 프랑스

가톨릭을 신봉하는 프랑스는 주로 교회묘지에 매장하는 관행을 갖고 있었으나 교회묘지의 부족과 도시화로 인해 유럽에서 가장 먼저 集團墓地 조성을 시작하였다. 1804년 도시의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하

30) 내부는 각층마다 3단정도의 벽장을 설치하여 약 1.5평의 면적에 5인 이상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축조된 아파트식 묘지 형태임.

여 영국식 정원 분위기를 살려 파리에 페르라세즈 묘지를 조성하였는데, 이것이 근대식 공원묘지의 효시이다. 이후 파리 시내에 14곳의 시립묘지를 분산·조성하여 공원·박물관 등의 위락·문화공간으로 활용케 하고 있다(장길웅, 1995). 최근 공원묘지가 만원이 되어 점차 묘지를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 되자 파리지 교외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프랑스 남부의 여러 도시에서는 공원묘지 뒤쪽에 묘지아파트를 건립하여 묘지의 구득난을 해결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埋葬率이 80% 이상으로 비율이 높다. 그러나 묘지난이 거의 없는 이유는 대부분 家族墓地 형태로 합장하고 묘지면적도 1기당 약 1/2평 정도로 좁게 조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는 묘지의 재사용을 위하여 5~30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時限附 墓地制度를 도입하고 있다. 재사용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연장하지 않고 대부분이 유골을 수습해 지하 遺骨 安置所에 안치하거나 火葬함으로써 개인 분묘가 영구화되는 경우³¹⁾가 적어 묘지난을 해소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프랑스는 묘지의 조성과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쑀문)의 업무로 분류하고 전국 약 3만5천개의 쑀문이 1개 이상의 공립 묘지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파리지의 경우 묘지운영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정거주지 안의 공설묘지에 매장되었다가 일정 시한이 지나면 유골 안치소로 안치되는 일반적인 장례관행을 따르고 된다.

31) 프랑스가 자랑하는 위인들의 묘소는 예외적으로 영구보존되는 경우가 있으나 영구묘소를 조성하는 데는 프랑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

라. 中國

전통적으로 중국은 장례제도와 묘지선택에 큰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풍수지리설에 따라 경관이 좋은 구릉지나 대도시 주변에 크고 화려한 家族墓地를 조성하였다. 1949년 자유화 이전까지 매장위주의 관행이 보편적이었다. 따라서 1930년대 전체 埋葬地가 중국 본토의 총경작지 1.1%를 점하게까지 되었다(Wu, 1994:26).

따라서 1949년의 자유화 이후 중국정부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강경한 火葬獎勵 政策을 시행하게 된다. 정책의 골자는 1) 화장장려, 묘지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불가, 시·읍 화장장 설치, 2) 경작지 확대를 위해 비경작지에 공동묘지 확대설치, 3) 경작물 재배를 위한 평분 매장 독려, 4) 장례절차의 간소화와 미신활동 제거 등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묘지정책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70년대 이후 주은래, 호요방 등 중국의 指導層이 率先垂範하여 매장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1978년 등소평의 행정개혁정책 이후 사회주의 특유의 중앙집권적 통제로 일정구역 안에서만 화장을 하도록 하고 화장을 안할 경우에는 직장 상사가 문책을 당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공식적으로는 100% 화장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경혜 외, 1996:37). 최근 근대화·개방화에 편승하여 중국의 연안도시와 내륙 농촌지역에서 화려한 가족묘지가 다시 팽창되자, 중국정부는 1988년에 “장례관리에관한규제”를, 1990년에 “묘지조성과토지남용금지에관한고시”를 발표하였다(Wu, 1994:29).

〈表 IV-2〉 韓國과 主要國의 墓地制度 比較

국가	묘지면적	화장률(%)	시한부묘지제	장법과 분묘형태	정책방향
한국	30m ² (단체) 80m ² (개인)	24	미시행	- 매장 - 봉분형	- 단위면적축소 - 시한부묘지제 도입 - 무연분묘 정비
일본	4m ²	97	도입검토중	- 납골당(묘) - 집단화	- 묘지공원화 - 무연묘 정비
중국	16m ²	100	미시행	- 토장 - 평분형 - 일부납골	- 면적축소 - 시한부묘지제 도입 - 화장·납골제 확대
프랑스	2.5m ²	8	10, 30, 50년 시한후 지하유골보관소 안치, 5~6년은 무상	- 지하집단 안치소 - 지하납골묘	- 묘지아파트 - 가족묘지 확대보급 - 시한분묘 확대
미국	2.9m ²	21	-	- 평분형 위주	- 화장권장 - 묘지면적축소

資料: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장묘제도 발전방안』, 1997에서 재정리함.

마. 外國 葬墓制度의 示唆點

1) 葬禮節次의 簡素化

日本은 조문객에 대한 주류접대 금지, 답례품 폐지, 조문객의 범위 제한 등 현대적인 장례절차의 간소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도 조문객의 밤샘이 없고 부의금 전달이 없으며 꽃을 들고 조문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과 복잡한 도시생활의 전개, 핵가족화의 진전 및 과거 대가족간의 유대감 상실과 함께 점차 장례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간소화를 빙자하여 왜곡화된 부의금 부담만이 늘 가능성도 없지 않다.³²⁾ 따라서 장례절차의 간소화 실천은 시민의식 개혁, 또는 시민실천운동을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2) 조의금을 포함한 경조금의 왜곡된 지출관행은 배화옥·이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조비 지출규모 분석”, 1998을 참고할 것.

2) 火葬慣行의 定着

日本과 中國은 화장관행 정착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주도하여 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례국가이다. 법·제도적인 접근 외에 火葬에 대한 認識을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부가되어야 정책시행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일본이 火葬場의 現代化 노력으로 시설과 주위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현대적 이미지를 갖춘 화장장을 건축함으로써 화장에 대한 혐오감이 크게 불식시킨 것에 주안점을 둘 수 있다.

火葬慣行의 定着을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문화적인 행태를 법·제도로 규제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 후에 화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화장 및 납골당의 현대화 및 미학적 환경조성 등 火葬文化를 주도할 施設 및 設備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도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화장 및 납골시설 종사자들의 서비스 정신의 확립과 서비스 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3) 時限附 墓地使用 및 墓地面積 制限

구미 각국에서는 이미 납골당이나 유골안치소 등 대부분 時限附 墓地制度를 도입하고 있어 개인 분묘가 영구화되는 경우가 적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장묘법 개정안은 분묘사용기간은 60년으로 제한하되 기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5년씩 3회까지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60년이면 반영구적인데다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屍乾期間이 5~10년임을 감안하면 사용기간을 더 엄격하게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경우 묘지면적이 우리의 봉분묘에 비해 1/3 크기밖에 되지 않고, 프랑스는 대부분 가족묘지 형태로 합장하며 묘지면적도 1기당 약 반 평 정도로 좁게 조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葬墓法 改正案에서는 개인묘 면적을 종전 24평에서 9평으로, 집단분묘의 경우 9평에서 3평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묘 9평, 집단묘 3평도 사례국에 비하면 아직도 넓은 면적이 요구되므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면 다시 면적 제한을 개정하는 段階的 縮小가 요구된다. 평수의 제한도 중요하지만 개인묘지 보다 집단묘지 조성으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平墳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므로 封墳을 하되 평수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편, 전통적으로 매장문화를 표방하는 프랑스로부터 배울 점은 集團墓地制度를 일찍 도입한 것이다. 프랑스는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도시의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19세기초 공원묘지를 건설한 이후 集團墓地의 公園化 및 近代化를 실천하여 묘지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새삼 복잡한 도심의 공간에 공원묘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도시 외곽에 묘지, 박물관, 놀이공원을 혼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새로운 文化墓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專門 葬儀師 制度

선진 외국에는 시신의 위생적 처리 및 장의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商業的 葬禮禮式場이 보편화되어 있고 葬儀師 즉 殮師制度가 확충되어 있다. 이들 殮師는 목사 대신에 永訣式을 주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들의 집단세력화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보고도 앞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항공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하는 경우 국제관

례에 준하여 屍身을 이송하고자 할 때 公認葬禮師³³⁾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이다.

소위 영안실이라고 지칭되는 병원내 장례식장에서의 서비스 및 비용관련 횡포에 대한 문제도 떠오르고 있는 바 원인은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종교시설 건축시 반드시 靈安室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하여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장례식장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한다.

33) 현재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장의사와 전문장례사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전문장례사는 적절한 교육기관에서 위생학, 해부학 등 전문 지식과 소양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제도를 거쳐 양성화되는 직업인으로 한다. 전문장례사 자격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많은 토론과 연구를 거쳐야 할 과제이다.

V. 健全 家庭儀禮의 擴散 및 實踐方案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의 家庭儀禮慣行은 절차상 일부 簡素化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일생의 단 한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서 비용에 있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크게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낭비적, 과시적 가정의례가 늘어나고 있고, 사회전반적인 체면중시 현상과 가정의례서비스 업체의 상업주의와 맞물려 家庭儀禮의 高費用구조가 유도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家庭儀禮의 改善 혹은 簡素化에 관한 논의는 일제시대 이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즐기치게 거론되면서 오늘에도 여전히 전과 크게 다른 없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먼저 이렇게 된 데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부터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改善方案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1. 家庭儀禮 改善을 둘러싼 爭點

가. 家庭儀禮의 性格과 問題點은 무엇인가?

婚·喪禮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한 私的인 영역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의 범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이러한 사적인 영역의 일이 사적인 범위 내에 한정되어 있으면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사적인

영역의 일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할 경우에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부조리의 부분이다.

婚禮를 예로 들자면, 신부가 신랑의 일가 친족에게 과도한 예단 및 예물을 바쳐야 하는 관행 혹은 신혼 부부가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지하여 과소비적인 결혼식 및 신혼집을 차리는 문제는 이러한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에 해당한다. 건전한 생활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社會的 合意를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과도한 소비를 지향하는 이러한 관행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사회적 同質性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이 큰 경우, 내가 번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매우 크므로, 사적인 영역에서의 문제점을 단지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私的인 영역의 일이 公的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비합리적인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개인 및 가족에게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축하 혹은 애도를 받으면서 婚·喪禮를 치르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그런데 공적인 활동에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사적으로는 가깝지 않은 관계의 사람들을 참석하도록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단적인 예가 공무원의 경우 산하기관 및 관련 기업체의 임직원을 참석토록 하는 경우이다. 어느 정도가 우리 사회에서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의 範圍인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친척의 전 범위, 학연 및 지연에서 대면적으로 상호간 직접적인 접촉이 잦은 경우가 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주를 벗어난 관계는 모두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적인 일인데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할 경우의 폐해를 생각해 보자. 친하지도 않은데 시간과 돈을 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클 것이다. 이는 상호간의 情緒的인 共感帶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부담이므로 당연

히 이러한 부담에 대한 反對 給付를 기대하게 된다. 상호간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하다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보고 참석을 결정하고 그 금액만큼 부조를 하는 관행은 계산적인 相互間 去來의 형태에 불과하다. 반면 상호간의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고 특히 업무상 관계가 밀접하다면, 이는 다름 아닌 뇌물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사회를 지향한다면 이러한 거래관계가 없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나. 家庭儀禮의 改善이 왜 全國民的 問題로 浮上되어 왔는가?

전세계적으로 가정의례 개선이 전국민적 문제로 부상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 結婚과 葬禮에 많은 비용이 들지만 떠들썩하게 주위의 축하를 받고 자신과 가족의 社會的 地位를 확인받으며 集團結束을 공고히 하는 기능은 어느 나라에나 있으며 비단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1997년 혼례실태에 관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나라가 결혼 비용에서 많기는 하지만 선진 산업국과 비교하여 크게 費用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³⁴⁾ 오히려 여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우리와 대동소이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단편적으로 서양의 결혼이 간소한 것으로 흔히 언급하기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나라들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結婚費用은 결코 간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家庭儀禮 改善이 전국민적 문제로 부상한 데에는

34) 앞서 일반대중의 결혼비용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GNP 또는 GDP대비 선진산업국의 결혼비용구성이 우리의 결혼비용구성에 비해 높지 않음을 단순 짐작하였지만, 실제로 결혼피로연의 경우 사례국들의 비용지출이 우리보다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특수층이나 상류층의 결혼비용은 우리에게 비해 오히려 높다. 한국 소비자보호원,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 참조.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일제시대 식민정부가 가정의례 간소화를 위한 준칙을 제정하였으며, 이것이 해방이후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로 계승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법률로까지 만들어져 가정의례를 제도하고자 한 것은 군사혁명정부의 권위주의적 철학과 통치방식의 결합이 탄생시킨 것이다. 가정의례의 문제가 줄기차게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남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이고 따라서 계층간의 위화감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家庭儀禮를 포함한 國民意識 및 社會慣行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산업화·도시화된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서나 지적되고 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자본주의가 확대됨에 따른 상업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높아지며, 가족 및 공동체의 집단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다양한 社會問題가 증가하게 된다. 가정의례의 형식주의, 상업주의, 물질주의적 요소가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의 반영이다.

우리 나라의 家庭儀禮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별도의 사회문제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맥락 속에 위치한 하나의 관행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특이하게 정부가 주도하고 법까지 제정하여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전통에 연유한 것임을 파악하는 것도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家庭儀禮는 과연 改善 可能한가?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의례의 규모 및 절차와 관련하여 호화 의례 및 형식적인 낭비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건전한 儀禮를 定立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비판의 목소

리는 어제오늘에 새로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문 및 기타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및 오늘날에 있어서도 호화 의례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은 시기가 없으며 비판의 내용 및 강도에 있어 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사회적인 비판이 계속됨에도 호화 의례관행 또는 불건전한 의례행위가 지속되는 것일까. 본 절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검토와 함께 健全 儀禮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해 보기로 한다.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은 호화 의례를 選好하는 階層과 이에 대한 批判을 하는 階層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조남훈 외 1993; 국립여성복지원, 1983), 이러한 가설의 일부는 옳으나 또한 동시에 그릇된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여성복지원(1983)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호화 의례의 항목인 상례시 10개 이상의 화환 금지 규정에 대한 태도에 있어 이를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34.5%가 지지한 반면, 중위 소득계층의 경우 20.2%이며, 하위 소득계층의 경우 16.1%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호화 의례에 대한 금지 규정에 대하여 보다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나, 계층간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조남훈 외(1993)의 연구는 이러한 경향을 재확인시켜 준다. 또 다른 호화 의례에 관련된 사항인 호텔에서의 혼례 금지규정에 대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호텔에서의 결혼식을 치른 경우는 많으나 막상 호텔에서의 결혼식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허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소득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해석해 보면 상류층 사이에서도 남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을 위하여 호화 결혼식을 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분명하지 않은 점은 그들이 호화 의례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호화 의례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나, 능력이 있는 상류층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혹은 ‘상류층도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호화 의례가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경험적으로 구분되어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선불리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단지 上流層 사이에서도 호화 의례행위를 경쟁적으로 지향함으로써 상호간에 의도하지 않았던 손실을 서로가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위 경제학에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고 하여 상호간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호 모두가 손실을 입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류층 서로 간의 경쟁적 호화 의례로 인한 손실 및 여타 계층이 가지는 違和感과 模倣行爲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 구성원 서로간의 경쟁적 호화 의례를 지양하는 제도적 혹은 비제도적 기제(Mechanism)를 통해, 상대가 분명히 일정 규모 이상의 의례-혼례이던 혹은 喪葬禮이던-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보 혹은 확신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확신과 정보를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되며 社會構成員의 대다수가 合意하는 기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 더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히 사회관행의 전파 방식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자 및 문화인류학자들

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관행들이 상류층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의 다른 계층에 의하여 모방됨으로써 관행의 확산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Popenoe, 1986).³⁵⁾ 일단 어떤 관행이 상류층의 일부에 의하여 채택될 경우, 상류층 내에서도 집단 내부적으로는 지위의 확인 및 여타 집단에 대하여는 과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를 발휘하여 다른 계층에까지 이러한 관행의 확산을 가져오게 된다. 반면 상류층은 그들의 관행을 중하류층의 모방으로부터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보일 것이며 이는 그들의 관행에 있어 고급화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호화 의례의 경우가 이러한 傳播 過程을 답습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확산 과정을 막는 출발점 또한 사회의 상류층에 맞추어져야 한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상류층에서부터 호화 의례를 자제하도록 하는 기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앞의 의례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논의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의례와 관련하여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 전통중의 하나가 私的인 儀禮의 영역을 公的인 行政力으로 規制하는 발상이다. 과거 유교의 전통이 지배하였던 시기에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저항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교 그 자체가 의례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회의 지도층이 유교를 신봉하고 이를 여타 계층에 대하여 敎化의 手段으로 이용하는 한 지도층간에 의례의 내용 및 적정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류층 내에서 경쟁적 호화 행위를 추구하여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시대의 신분제

35) 물론 사회의 하층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전반으로 퍼지는 관행 또한 다수 존재하나 위로부터 아래로 전파되는 관행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청바지 혹은 제즈의 유행을 들 수 있다.

도가 중하류층에 의하여 이러한 상류층의 의례관행을 모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였을 것이므로 호화 의례의 확산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상류층의 관행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게 되고, 상류층 내에서는 적정한 의례 절차 및 규모에 관한 합의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경쟁적인 고급화 경향을 나타내고 이것이 다시 중하류층에 模倣되는 惡循環을 거듭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과거 신분제 사회의 굴레로부터 해방된 부작용이기도 하며, 일제시대와 1950년대의 전쟁을 치르면서 과거 가족주의적 가치에 근거를 둔 보편적으로 합의된 사회 질서가 무너져버린 대신 그에 대신할 만한 社會倫理가 설정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김태길, 1990).

호화의례의 주요 기능이 상류층의 경우 자신들의 집단적 차별성을 과시하고 집단내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호화의례를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 또한 이러한 의례의 기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해결점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의례의 상징적인 의미는 탈색되고 사회적인 기능만이 남게 되므로 의례라는 행위 양식이 존재하는 한, 상류층의 儀禮를 통한 集團維持機能을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상류층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절제를 요구함으로써 상류층 내에서의 소모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타 계층과의 사회적인 위화감을 적정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뿐이다.

2. 健全 家庭儀禮의 實踐方案

가정의례의 문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정의례 문화에 대한 올바른

價値體系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家庭儀禮關聯 制度가 整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된다. 가정의례는 사회관습적 영역으로 일시에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정의례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개인과 가족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해집단들이 상호작용과 사회 전체의 공동노력에 의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가. 家庭儀禮의 改善方向

가정의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정의례와 관련된 사회적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방향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실천을 통하여 민간부문 특히 사회지도층의 호응을 유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타사회계층의 동의를 얻어 전국민에게 쉽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어떤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 데 또한 모두 동의한다. 소위 이 관계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도 한결같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과 부유층이 率先垂範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일관되게 문제에 대한 진단이 일치되어 있다면, 해결방안도 이러한 진단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겠는가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婚·喪禮와 같이 사적인 영역의 일을 법·제도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 ‘家庭儀禮에 관한法律’에 家庭儀禮準則이라 하여 혼인의 절차, 상례 및 제사의 절차 등에 대하여 소위 준거가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신에 맞지 않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기타 규정도 거의 死文化되어 있어 건전 가

정의례의 유도를 위하여 뚜렷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데, 이는 가정의례의 문제를 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 타당한 발상인가에 대한 재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法規上에 더 상세히 규정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家庭儀禮의 健全化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의례의 문제로 일컬어지는 과소비, 세과시 등 사회관행과 관련된 문제를 하루아침에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를 직접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벌칙을 매기는 것은 어렵다. 각 개인의 自發的인 參與를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 이외에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재의 우리 나라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법·제도나 정부의 역할로 맞지 않는다. 결국 우리사회의 지도층 및 상류층 인사를 일차적 대상으로 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自發的 參與를 誘導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로 모아진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도 하지만, 사회관행을 앞에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이 개선될 경우 국민 대다수가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과소비, 세과시의 부정적 가정의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들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일차적인 개선 대상으로 할 경우 國民의 呼應을 얻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가정의례가 사적인 영역의 행위이면서 지도층과 상류층의 개선을 사회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가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國民實踐運動을 통한 지도층과 상류층의 자발적인 개선 행위를 통해 해결되어질 문제이지만, 정부와 민간 간의 상호간 협조를 통해서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가정의례의 각 구성부분에 대하여 앞에서 검토한 변화의 방향에 맞추어 대안을 제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家庭儀禮文化의 정착을 위해 가정의례문화의 가치

관 정립과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을 통한 사회기풍 조성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가정의례 정책추진의 基本方向은 첫째, 건전한 가정의례 모델의 기준을 설정하고 段階的인 實踐方案 수립, 둘째, 건전한 가정의례실천 사례 홍보활동 강화 등 범시민실천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셋째, 慶弔金授受 慣行 改善, 마지막으로 가정의례관련 종합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통한 家庭儀禮 서비스制度 改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健全 家庭儀禮의 實踐方案

1) 家庭儀禮모델 設定 및 段階別 實踐

건전한 가정의례모델을 만들어 公共部門 從事者에게 권장하고, 일반국민들도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가정의례 구성요소별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이를 실천의 준거틀로 만드는 것이다.

우선 허례허식과 낭비적인 가정의례 절차의 폐지와 간소화하는 것이다. 혼례의 경우 구성요소별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약혼식과 합들이, 폐백은 가급적 간소화하게 하되 최종적으로는 폐지한다. 혼인비용 지출은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하되 비용부담은 신랑, 신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혼례식은 공공기관이나 여타 비상업적인 강당을 이용하도록 강력히 권장하고, 초청자는 신랑과 신부측을 합하여 100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친인척 외의 경조금 수수는 하지 않는다. 축의금의 범위와 규모를 제한하고, 피로연은 가족중심으로 검소하게 치르도록 하는 등의 건전 혼례모델 기준을 정하여 이를 사회지도층부터 따르도록 강력히 권장하여야 한다(表 V-1 참조).

〈表 V-1〉 婚禮 構成要素別 實踐內容

혼례구성요소	실천 내용
약혼식	양가 부모와 결혼당사자가 만나 혼인과정 및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것으로 함.
합들이	신랑이 혼자 신부집에 방문하여 신부의 가족들과 간단한 식사를 하되, 금품수수행위는 하지 아니함.
하객초청 범위	하객의 범위에서 직접 가깝지 않은 친지를 제외하도록 함. 양가 각각이 50~100명을 넘지 않는 가족행사로 함.
청첩장	청첩장의 발송 범위를 축소해 나감. 혼인식후 인사장으로 대체함.
축의금	우체국, 은행의 온라인을 이용하며, 축의금의 교환 범위를 축소해 나감. 친인척 이외의 경조금 수수는 폐지함.
폐백	간소한 가족모임으로 대체함. 신혼여행후 가까운 친척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함.
피로연	가까운 친척들과의 식사로 제한함. 식사시간이 아닌 경우는 다과를 제공함.

葬禮節次는 유교, 기독교, 불교 등 고인의 종교에 따라 임종에서 부터 하관에 이르는 簡素화된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되, 장례장소는 병원장례식장, 전문장례장의 기타 종교시설의 사용을 확대해 나간다. 인쇄물에 의한 부고행위를 금지하고 賻儀金의 交換範圍를 친인척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問喪客에게 간단한 음식을 제공토록 하며 주류접대, 화투, 밤샘관행을 금지토록 한다. 묘지 사용은 단위면적(6평 이하)과 사용기간(60년)을 제한하고, 매장과 화장제도를 접목시켜 가족형 합동 분묘형식을 권장토록 한다(表 V-2 참조).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장례예식은 유가족의 슬픔을 잊게 한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문상객들이 술과 화투치기 등으로 밤샘을 하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임종 준비 방법, 시신 처리방법, 입관 전후에 할 일, 발인순서 등 故人의 종교별 葬禮節次에 대한 標準的인 指針을 마련하여 정중하면서도 경건하게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장례절차에서는 故人이 生時에 말했던 것, 글로 남긴 것 등을 전시하거나 보여 주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고인을 회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의미있는 장례가 될 것이다.

〈表 V-2〉 葬禮 構成要素別 實踐內容

장례구성요소	실천 내용
장례 절차	유교, 기독교, 불교 등 고인의 종교에 따라 임종에서부터 하관에 이르는 간소화된 장례절차를 진행
장례 장소	병원장례식장, 전문장례장의 기타 종교시설의 사용을 확대해 나감.
조문객초청 범위 및 부의금	인쇄물에 의한 부고행위 금지와 부의금의 교환범위를 친인척으로 제한하도록 함.
문상 및 음식 접대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상주와 그 가족을 위로함. 문상객에게 간단한 음식을 제공토록 하며 주류접대, 화투, 밤샘관행을 금지토록 함.
묘지사용	묘지 사용은 단위면적(6평 이하)과 사용기간(60년)을 제한하고, 매장화장제도를 접목시켜 가족형 합동분묘형식을 권장토록 함.

2) 國民實踐運動 展開

가정의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法·制度를 통한 개선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가정의례의 건전화에 위한 사회운동을 추진하는 데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먼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중심으로 意識 및 慣行 改革運動을 벌여 공직자 윤리관련 지침 등으로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보이도록 강력히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公共部門의 위계서열적 분위기에서 이러한 健全化 運動을 위에서부터 추진한다면 공공부문 전반에 파급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국민전반에 대한 先導的 役割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공공부문 종사자가 사회관행의 건전화에 앞장 설 경우 민간의 부유층이 따르지 않을 수 없

으며 이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가정의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안된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통한 접근에 주력해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효력을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당사자들에게도 불만족스러운 관행이 계속된 이유는 적용가능한 대안이 부족한 때문이다. 건전한 관행을 보급하기 위하여는 일반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대안의 제시와 함께 모범 사례에 대한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에서의 관행 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전략의 수정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의 건전화 노력을 감시하는 역할과 함께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건전화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으면 민간운동으로 관행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별 효력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즉 지금까지 정부의 노력에서 法·制度를 강화하거나 민간부문의 운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은 公共部門의 先導的인 實踐이 빠졌기 때문에 효과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가정의례의 외적으로 판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실천운동을 벌이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체면문화에 젖어 있는 가정의례문화에 대한 國民意識改革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 ‘가정의례 시민대학’, ‘가정의례 상담전화’ 개설 등 건전 가정의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言論媒體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전 가정의례 모델 및 사례들의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3) 慶弔金 授受慣行 改善

한 가정의 大事에 있어서 친인척 및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다는 의미에서 경조금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慶弔事 文化는 과거 전통사회의 상호부조의 의미가 탈색되어 물질적 혹은 금전적 교환만이 강조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랄 수 있겠다. 즉 우리의 문화적 관습으로는 청첩장 또는 訃告를 받게 되면 상대가 누구인지를 따지기 전에 결혼식장 또는 문상을 가게 마련이며 갈 형편이 되지 않으면 慶弔金이라도 보내게 마련이다.

현행 가정의례식장에서 금전을 주고받는 慶弔金 授受는 상호부조의 근본적 의미가 변질되어 관행화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근원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가정의례가 가족행사화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며, 慶弔事에 대비하여 저축, 보험 등을 통해 자립적으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경조사에 대비한 다양한 저축 및 보험상품을 개발, 보급하여 가정의례비용을 저리로 조달, 장기에 걸쳐 분담함으로써 경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건전한 풍토를 마련해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경조금 금액은 전통과 관습을 고려하여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적정금액을 권장하고, 범시민실천운동을 통해 이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家庭儀禮關聯 綜合서비스 體系 構築

가정의례 서비스업의 전근대적 영업관행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소비자의 불만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던 가정의례 서비스업의 閉鎖性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의례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業者의 입장에서조차 불만이 크므로 가정의례서비스에

있어서 市場經濟原理에 의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의례서비스 供給者의 多樣化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인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가정의례장소 및 영업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전문가정의례식장 이외, 종교기관 등 가정의례관련 서비스 시설을 다양화하여 공급확대를 유도한다.

가정의례관련 종합서비스는 家庭儀禮 행사에 필요한 절차와 정보, 혼례용품 및 장례물품, 가정의례관련 시설이용, 그리고 행정절차 등 모든 서비스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즉 가정의례종합서비스센터는 결혼서비스센터와 장례서비스센터로 구분하여 건전한 가정의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地方自治團體를 중심으로 마련한다. 이는 건전 가정의례모델의 실천을 위해 가정의례장소를 비롯한 서비스의 종류, 공급업체 및 기관명, 가격 등 다양하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특히 종합장묘서비스센터를 예를 들자면, 사망에서부터 장례절차, 매장 또는 화장, 그리고 유가족을 위한 서비스의 전과정을 관리해 주며, 기존의 민간 장묘서비스업체와 상호연계하여 사회적 욕구에 부응한 종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종합가정의례서비스센터는 가정의례서비스의 적정수준의 質의 확보와 質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차별화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며, 필연적으로 가정의례절차의 신속화 및 가정의례관련 시설의 선진화를 얻게되고, 가정의례비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강원석, 『묘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논문, 1990.
- 공세권 외,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 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국립여성복지원, 『가정의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국립여성복지원, 1983.
- 김모란,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4.
- _____,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9집, 1995, pp.533~538.
- 김태길, 『한국사회의 사회윤리, 무엇이 문제인가』, 『현대한국의 사회윤리』, 아산사회복지재단 제1회 사회윤리 심포지엄, 1990.
- 김태복,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공청회』. 1998. 9.
- 김형석, 『현대사회와 예』, 탐구당, 1989.
- 박종한, 『한국장례의식의 정신분석학적 고찰』, 『최신의학』, 22권 7호, 1990.
- 박혜인, 『한국 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하나의 문화, 1991, pp.17~74.
- 박숙자,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이효재 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하나의 문화, 1991, pp.75~116.
- 배화옥·이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조금 지출규모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여름.
- 서울방송, 『한국의 혼례실태 조사 보고서』, 1997.
- _____, 『한국의 혼례문화에 대한 의식조사 보고서』, 1997.

- 손승영, 『가정의례』,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1997, pp.251~292.
- 오홍철, 『화장제도의 발전방안 모색』, 『장묘문화 발전방안 공청회』, 1992.
- 이광규, 『한국인의 일생』, 형설출판사, 1985.
- 이현송·배화옥, 『의례의 사회적 기능과 변화』, 『보건사회논집』 제16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여름.
- _____, 『혼례문화의 문제점과 정책과제-건전 혼례모델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이현송·이필도, 『장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장길웅, 『한국 묘장제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장철수,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5.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1996.
- _____, 『경조비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 1997.
- 전경수 역(A. Van Gennep 저),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 전병재, 『예의 사회적 기능』, 『현대사회와 예』, 탐구당, 1989, pp.285~320.
- 정승모, 『상·장제도의 역사와 사회적 기능-신유학적 가례체계를 중심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 상장례』, 미진사, 1990, pp.173~186.
- 정진홍, 『개신교의 관혼상제 의식』, 박근원 편, 『기독교와 관혼상제』, 전망사, 1984, pp.51~77.
- 조남훈 외, 『가정의례에 관한 의식행태조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차재호, 『가정의례의 사회심리적 고찰』, 가정의례 개선에 관한 공청회 자료, 1993.
- 최길성, 『한국의 조상숭배』, 예전사, 1991.

- 최현숙, 『한국의 사적 원조연결망에 있어서의 상례부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한국소비자보호원,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화 방안』, 1997.
- Wu chuan-jun, 『중국의 토지이용과 묘지문제』, 『토지행정』 7월호, 한국토지행정학회, 1994.
- 葬送文化研究會, 『葬送文化論』, 古今書院, 1993.
- 橫山潔, 『葬のマナ』, 秀版社, 1992
- 井上治代, 『いま葬儀, お墓が變おる』, 三省堂, 1993.
- 表現社, 『葬儀』通卷 43號, 1998. 1.
- 藤井正雄 外, 『家族と墓』, 早踏田大學出版部, 1993.
- 芳賀登, 『葬儀の歴史』, 雄山閣, 1991.
- Mitford, Jessica, *The American Way of Death*, Quartet Books Limited, London, 1978, pp.259~282.
- Popenoe, David, *Sociology*, 6th ed. Prentice Hall, 1986.

□ 著者 略歷 □

● 李 必 道

高麗大學校 經濟學 碩士
高麗大學校 經濟學 博士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責任研究員

〈主要 著書〉

『健全 葬墓모델 開發 및 實踐方案』, 1998. (共著)
『家庭儀禮의 經濟的 費用分析』, 1997. (共著)

● 裴 花 玉

慶熙大學校 平和福祉大學院 社會福祉學 碩士
Egypt Cairo Demographic Center 人口學 證書 課程 修了
現 韓國保健社會研究院 主任研究員

● 李 顯 松

美國 Ohio State University 社會學 博士
現 湖西大學校 社會福祉學科 教授

政策報告書 98-08

健全 家庭儀禮 定着方案

Change and Social Impact of Family Rituals

1998年 12月 日 印刷 畵 4,000원

1998年 12月 日 發行

著 者 李 必 道 外

發行人 鄭 敬 培

發行處 韓國保健社會研究院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山42-14

代表電話 : 02) 355-8003

登 錄 1994年 7月 1日 (第8-142號)

印 刷 東苑文化社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8

ISBN 89-8187-154-X 93330